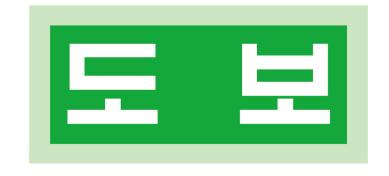
# る名単語以対を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115 호

2025. 2. 28(금)

#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7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8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9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0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2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4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5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6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7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9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0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2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5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5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6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2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26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30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3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53

발행: 대 변 인 실(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_
ᇧ	_
~~	т
	1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7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3

# 卫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3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4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5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6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7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8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9호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 128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변경) 고시 ...... 133 2024년산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용 종자가격 고시 ...... 134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 135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30차) 변경고시 ...... 142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 154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 160

# 공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80호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166 

# 시 군 행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0 춘천시 고시 제2025-113호 춘천시 고시 제2025-11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72 강릉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소로 2-1호선)사업 강릉시 고시 제2025-67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4 강릉시 공고 제2025-356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 공고 ...... 177

강릉시 보건소 공고 제2025-38호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공고 180
동해시 고시 제2025-27호	동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5)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삼척시 공고 제2025-315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안)의 열람 공고202
삼척시 공고 제2025-331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1,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205
영월군 고시 제2025-52호	영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07
영월군 공고 제2025-339호	영월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209
평창군 고시 제2025-32호	봉평공원 및 소공원4개소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17
횡성군 고시 제2025-50호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25
횡성군 고시 제2025-51호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대동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6
정선군 공고 제2025-180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30
양구군 고시 제2025-11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_봉안시설)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36

#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안전승하차 회차로" 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 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련 행정·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

O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교 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하굣길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O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O 학교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O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제5조)
- O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피해자" 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막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 2.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연계
- 3. 그 밖에 피해자의 타기관 전학, 전출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

O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 및 학교에서 불법합성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O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O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제4조)
- O 예방사업의 내용을 규정(제5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제6조)
- O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
-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축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의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O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4조)
- O 인증취득 의무, 인증취득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제7조)
- 공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8조)

2025. 2. 28(금요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이스포츠" 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학교 이스포츠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 2. 학교 이스포츠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생선수 지원
- 2.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 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이스포츠 과의존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

○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O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O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O 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O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을 "외국어교육"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체험활동, 다문화교육"을 "체험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직속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조정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사무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6조 및 제18조)
  - 다문화교육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정책적 기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1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별표]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 1. 벽지

# <가지역>

	기관 소재지	기관명	
시군	위치	- 기단당	
인제군	기린면 설피밭길 432	기린초등학교진동분교장	

# <나지역>

	기관 소재지	र्ग जी पर्व
시군	위치	기관명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	이승복기념관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신동읍 운치길 51	예미초등학교운치분교장
	정선읍 수미길 7	정선초등학교가수분교장

# <다지역>

	기관 소재지	्रो जो mi	
시군	위치	- 기관명	
춘천시	남면 여우내길 20	가정중학교	
	남면 충효로 139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사북면 화악지암길 431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	
	북산면 북산로 34	추곡초등학교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890-14	숲실초등학교	
태백시	역둔원동로 1405	미동초등학교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27	가곡고등학교	
	가곡면 가곡천로 1427	가곡중학교	
	가곡면 가곡천로 1430	오저초등학교	
	하장면 백두대간로 2600	하장중학교	
	하장면 하장길 84	하장초등학교	
홍천군	내면 구룡령로 5931	원당초등학교	
	내면 방내로 12	율전초등학교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461	춘당초등학교	
평창군	진부면 거문길 24	거문초등학교	
정선군	화암면 대지산길 22	백전초등학교	
고성군	토성면 무릉도원로 486	도학초등학교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855	상평초등학교공수전분교장	
	현북면 어성전길 114	현성초등학교	

# <라지역>

	기관 소재지	기관명
시군	위치	. , e o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510-5	송화초등학교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070	비두초등학교
	호저면 칠봉로 347	산현초등학교
	신림면 중골길 6	황둔중학교
	신림면 신림황둔로 1185	황둔초등학교
태백시	태백로 1126	태백교육도서관
	하장성1길 14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방터골1길 59	동점초등학교
	평화길 44	삼성초등학교
	태백로 1221	상장중학교
	태백로 1223	상장초등학교
	연지로33번길 26	세연중학교
	일광마을길 8-12	장성여자고등학교
	보드미길 26	장성초등학교
	상철암길 10−32	철암고등학교
	상철암길 10−32	철암중학교
	동태백로 584	철암초등학교
	금천길 179	태백라온학교
	장성로 265	태백중학교
	태백로 1811	태백초등학교
	태백로 802	태사랑유치원
	태백로 802	태서초등학교
	통골2길 9	통리초등학교
	서학로 997	하늘빛유치원
	평화길 8-24	한국항공고등학교
	번영로 11	함태중학교
	소도길 69	함태초등학교
	<u></u> 번영로 179	황지고등학교
	문화로1길 1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황지중앙초등학교
	문화로 16	황지중학교
	<u> </u>	황지초등학교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69	도계고등학교
	도계읍 도계느티로 24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도계읍 도계느티로 36	도계중학교
	도계읍 도계로 265	도계초등학교
	도계읍 도계도 200 도계읍 도계로 265	도계한빛유치원
	도계읍 조계포 200 도계읍 장원길 25	소개천 <u></u> 자기천 장원초등학교
	도계급 정권된 25 도계읍 흥전안길 137	정면소등막교 흥전초등학교
홍천군	도게급 중신안실 137 내면 구룡령로 5174	중신소등막교 내면고등학교
<b>万</b> 创七	내면 구룡령로 5174 내면 구룡령로 5174	내면고등막교 내면중학교
	서면 한서로 1843	대곡초등학교

	기관 소재지	구) -1) tri-
시군	위치	기관명
	서면 설밀길 76	모곡초등학교
	서면 팔봉산로 639	반곡초등학교
	서석면 구룡령로 2933	삼생초등학교
	서석면 청량로 25	서석초등학교청량분교장
	내면 구룡령로 5198	창촌초등학교
	서면 보리울길 3	한서중학교
	서면 밤벌길2번길 12	한서초등학교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145	강림중학교
	강림면 태종로강림4길 11	강림초등학교
	서원면 서원로 131	서원중학교
	서원면 서원로 173	서원초등학교
	안흥면 덕송로 23	안흥초등학교덕천분교장
	서원면 경강로 711	유현초등학교
영월군	상동읍 교촌길 20	구래초등학교
	산솔면 중동시장길 3-1	녹전중학교
	산솔면 유전길 3-2	녹전초등학교
	북면 문학로길 25-8	마차고등학교
	북면 문학로길 25-8	마차중학교
	북면 밤재로 221	마차초등학교
	무릉도원면 중방안길 68	무릉초등학교
	상동읍 태백산로 3147	상동고등학교
	상동읍 태백산로 3147	상동중학교
	김삿갓면 영월동로 1664	옥동중학교
	김삿갓면 영월동로 1679	옥동초등학교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	강원학생스포츠센터
	방림면 계촌길 139	계촌중학교
	방림면 계촌길 63	계촌초등학교
	대관령면 도암새싹길 11	대관령초등학교
	대관령면 경강로 4177-6	도성초등학교
	봉평면 태기로 493-11	면온초등학교
	용평면 운두령로 100	속사초등학교
	대화면 하안미길 11-8	안미초등학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300	갈래초등학교
	정선읍 봉양4길 9	정선교육도서관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고한읍 고한9길 160	고한고등학교
	고한읍 고한9길 160	고한중학교
	고한읍 고한4길 11	고한초등학교
	북평면 남평강변로 406	나전중학교
	남면 칠현로 70	남선초등학교
	북평면 송석길 137	남평초등학교
	정선읍 벽탄길 32	벽탄초등학교
	정선읍 녹송7길 1	봉양초등학교

기관 소재지		ગ ગોમ
시군	위치	기관명
	북평면 서동로 2170	북평초등학교
	사북읍 소금강로 3640	사북고등학교
	사북읍 소금강로 3640	사북중학교
	사북읍 소금강로 3561	사북초등학교
	여량면 여량7길 42	여량고등학교
	여량면 여량7길 42	여량중학교
	여량면 서동로 2950	여량초등학교
	신동읍 의림로 327	예미초등학교
	임계면 백두대간로 1313	임계고등학교
	임계면 백두대간로 1313	임계중학교
	정선읍 봉양4길 15	정선고등학교
	정선읍 와평2길 11	정선유치원
	정선읍 용담샛길 2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정선읍 봉양4길 15	정선중학교
	정선읍 비봉로 15	정선초등학교
	남면 민둥산로 12	증산초등학교
	신동읍 함백로 376	함백고등학교
	신동읍 함백로 376	함백중학교
	신동읍 조동6길 17-12	함백초등학교
	화암면 그림바위길 50	화동중학교
	화암면 그림바위길 66-20	화동초등학교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9-4	다목초등학교
	상서면 영서로 7778	산양초등학교
	상서면 봉오새싹길 31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
	사내면 실내길 26	실내초등학교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057	방산중학교
인제군	인제읍 점봉산로 51	귀둔초등학교
	북면 미시령로 1031	용대초등학교
	북면 금강로 732	월학초등학교
	상남면 내린천로 3195	하남초등학교
	북면 한계1길 33	한계초등학교
양양군	서면 설악로 1173	상평초등학교오색분교장
	강현면 회룡1길 161	회룡초등학교

# 2. 접적

# <가지역>

	기관 소재지	기관명
시군	위치	/1113
양구군	해안면 편치볼로 1279	해안중학교
	해안면 펀치볼로 1341-33	해안초등학교

# 〈나지역〉

	기관 소재지	기관명
시군	위치	기선정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근남면 육단2길 34	근남초등학교
	김화읍 김화로 551	김화초등학교
	김화읍 도창2길 7-2	도창초등학교
	철원읍 묘장로 344	묘장초등학교

# <다지역>

기관 소재지		ਨੀ ਹੀ ਸੀ
시군	위치	기관명
철원군	서면 와수1로 90	김화고등학교
	서면 와수1로 72	김화공업고등학교
	서면 와수1로 90	김화여자중학교
	서면 와수1로 72	김화중학교
	서면 와수로 119	와수초등학교
	김화읍 청양로 381-19	청양초등학교
	갈말읍 토성길 43	토성초등학교

# 〈라지역〉

기관 소재지		ਹ ਹੋ ਸੀ
시군	위치	기관명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273번길 21-14	철원교육도서관
	갈말읍 두루미로 422-21	내대초등학교
	동송읍 금학로187번길 16-13	동송초등학교
	철원읍 금학로 297-18	새들유치원
	동송읍 오덕로 159	오덕초등학교
	철원읍 금학로251번안길 12	철원고등학교
	동송읍 이평로123번길 40	철원여자고등학교
	동송읍 이평로123번길 40	철원여자중학교
	철원읍 금학로251번안길 12	철원중학교
	철원읍 금학로 297-18	철원초등학교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21-7	방산초등학교
	동면 금강산로 1673	임당초등학교

기관 소재지		ਨੀ ਹੀ ਸ <b>਼ੇ</b>
시군	위치	기관명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 112	서화중학교
	서화면 금강로 1490	서화초등학교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길 476	대진고등학교
	현내면 화진포길 476	대진중학교
	현내면 대진3길 15	대진초등학교

## ◇ 개정이유 ◇

O「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하고자 함

- O 등급상향조정(초 1교, 2기관)
  - 태백 미동초등학교 (벽지 라 ⇒ 벽지 다)
  - 평창 이승복기념관 (벽지 다 ⇒ 벽지 나)
  - 정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벽지 라 ⇒ 벽지 나)
- O 등급하향조정(초 3교)
  - 홍천 대곡초등학교 (벽지 다 ⇒ 벽지 라)
  - 정선 백전초등학교 (벽지 나 ⇒ 벽지 다)
  - 양구 임당초등학교 (접적 다 ⇒ 접적 라)
- O 지역조정(중 1교)
  - 양구 방산중학교 (접적 라 ⇒ 벽지 라)
- O 등급해제(초 9교, 중 4교, 고 1교)
  - 춘천 광판초등학교 (벽지 라)
  - 춘천 광판중학교 (벽지 라)
  - 횡성 수백초등학교 (벽지 라)
  - 정선 임계초등학교 (벽지 라)
  - 철원 장흥초등학교 (접적 라)
  - 화천 풍산초등학교 (벽지 라)
  - 양구 대암중학교 (접적 라)
  - 양구 원당초등학교 (접적 라)
  - 인제 기린초등학교 (벽지 라)
  - 인제 기린중학교 (벽지 라)
  - 인제 기린고등학교 (벽지 라)

- 인제 상남초등학교 (벽지 라)
- 인제 상남중학교 (벽지 라)
- 고성 인흥초등학교 (벽지 라)
- O 명칭변경(초 2교, 5기관)
  - 강릉 임곡초등학교 ⇒ 강릉 숲실초등학교
  - 화천 봉오초등학교 ⇒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
  - 강원학생선수촌 ⇒ 강원학생스포츠센터
  - 강원학생교육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 강원통일교육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3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병설유치원란과 별표 2 중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라지역>의 화천군 기관명란 중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란을 삭제한다.

◇ 개정이유 ◇

○ 2025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 O 학교 폐지(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
  -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병설유치원
  - 화천 상승초등학교봉오분교장(⇒ 상승초등학교와 통합)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4호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유학생"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나.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도내의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2. "재외국민 학생"이란 영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 나 연구하는 학생 또는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 2.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장학금 지원
- 3.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 5. 문화·체육행사 개최
- 6.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강원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 ·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O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O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O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O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O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O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5호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원자치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강원자치도 관련 특례 정책 및 입법 추진
- 2.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의견수렴
- 3. 강원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 4. 강원자치도 관련 역량 결집 및 홍보 활동
-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 2. 강원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 및 분야별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 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여 미래산업글로 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O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O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O 추진범위 및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안 제3조, 제4조)
- O 협의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포상, 규칙(안 제5조~제8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6호

#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 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 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 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 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 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 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 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 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5. 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강원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결산 총괄부서의 장
- 2. 강원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의 장
-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교육과정의 운영)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① 도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O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O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및 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시행규칙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5년 2월 28일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7호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 3.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 4.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
- 5. 문화예술 학습·체험·창작 활동 지원
- 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
-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 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 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내 문화예술 전문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O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O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청소년 성착취" 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협박 등을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이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상담 및 보호
-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 시 상담원의 파견·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상담
- 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 5.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및 사례관리
- 6.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 감시·신고 활성화
-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홍보ㆍ캠페인 및 예방교육

-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O 아동·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 O 지원사업(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6조)
- O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O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O 비밀의 유지(안 제9조)

2025. 2. 28(금요일)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9호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스마트농업의 육성"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 다) 스마트농업"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를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 여"로, "5년마다"를 "매년"으로, "강원자치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으로,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등 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을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추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스마트농업 홍보)"를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하려고 함.
- 스마트농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률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려고함.

## ◇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정의 인용(안 제2조)
- 스마트농업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률조항 인용과 위임사항을 신설반영(안 제4조)
-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문수정,「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문장 정비 등 요구사항 반영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0호

##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2. "인삼산업" 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다.
- 4. "생산자단체" 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시설・자재・장비의 현대화
- 2. 가공・유통・수출・판로지원
-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인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 인삼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도모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을 지원하여 도내에서 인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임.
-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1호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을 "사업을 하는"으로, "환경관련법인·단체에 대하여"를 "환경 관련 법인·단체에"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토 청결활동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 규정을 마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와 표현 정비(지원대상의 명확한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환경실천 관련 사업을 추가로 규정(안 제16조제5호 신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5년 2월 28일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2호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 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 없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 •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 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재 취소)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5조제4항에 따른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누리집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①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장·군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 지한 경우
- 2. 시장 ·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관리) 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게 된 경우
- 2.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
- 3.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 게 알려야 한다.
- 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 ④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하거나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시청기교	전화번호	
신청기관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디	
	② 안전진단: [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 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del>'</del>	f급: 명,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	다로 붙임			
	충	총 명 (건축사: 명, 특 분류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분류 장비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분류     자본금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분류 자본금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분류 자본금 장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류

-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 휴업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 재개업
_	_

신고서

[ ] 폐업(등재취소)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낳으며, [ ]에는 해당	되는 곳에	√표를 합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	재일		
신고인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b>나업자등록</b>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 * 점검대상 규모별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② 안전진단:[]	구분 미만[ ], 연면				<u></u> 나제 곱미	터 미만[	1,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또는 등	재취소 사유							
「강원특별	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 5115	5 호	강 원 특	F 별 2	자 치 도	보		20	)25. 2	2. 28(금요	오일)
■ 강원	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	례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	관리점검 및	및 점	범검기관	<u></u> 가	정 통	보서			
	([] 정기	점검, [ ] 긴급점	넘검, [	] 소규모	노후 7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	년호									
구나리 자	·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88(대한 또는 사내사장)						(전화번호:			)
대지위	치									
용도				구조						
 건축물	도수	세대(호)수				연면적				
										m²
		점	검대성	) 건축물						
순번	명칭	사용승인일	연민	면적(m²)	세디	배(호)수	점검근기	4	점검기현	<u></u>
1										
2										
3										
지정된	기관명	1			-					
건축물				법인등	록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관리점	세ᅱ									
기관 							(전화번호:			)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7									
	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7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물관리섬·	검기
							년	월	Ç	델
		00시장	· 군 <u>·</u>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해체공사감	리자 등재	(취소) 신청	성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	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			
신청구분	[ ] 신규	[] 재신청		[ ] 취소		
감리원배치 (중복가능)	[ ] 해체허가 (연면적 3천㎡ 미만)	[ ] (9:	해체허가 <sup>[면적 3천㎡</sup> 이상)	[ ]	해체신고	
※ 「건축물관리	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의 감리원 배치기준)(	에 따른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남[] 여	Г 1
			자격번호		ы. 1-1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			게서시그버호	/ 권서에 되나 10	시리 드로버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시니어	개당 등폭면오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주소					
 「강원특별기	' 다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	1항(제10조제2형	s)에 따라 해체공	·사감리자 등재	(취소) 신청서	<u></u> 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_	_	
			신청인		(서명 또	는 이)
강원특별	<b>결자치도지사</b> 귀하				(10 -	
		첨부 서류				
	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					
	.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E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u> </u>		210mm>	×297mm[백상지 8	30g/m²]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

	(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	
접수번호		법수일 
	성명	생년월일 남[]여[]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주소	<u> </u>
	[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5	또는 입원
사유	[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및 기간	[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김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 _	[ ] 그 밖에 사유	
	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강원특별	- 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02 15	_ , , _ , _ , _ , _ , _ , _ , _ , _ , _	
		년 월 9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m²]

#### ◇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5년 2월 28일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3호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 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 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강원특별 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치유자원 관리 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 2. 해양치유자원 현황 ·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 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치유 관련 교육 · 홍보
-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해양치유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해수, 해초, 해산물, 해풍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 증진, 재활치료 등의 목적을 얻는 것으로, 강원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사업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특화작목의 홍보
- 2.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시설 현대화
- 3. 지역특화작목의 품질유지와 품질개선을 위한 포장재 및 상품 개발
- 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지역특화작목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함을 말한다)
-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6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 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 는 법인· 단체
  - 나.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 인 또는 법인· 단체
- 2.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 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 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 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 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 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 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 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 속해서는 안 된다.
-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 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 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 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⑥ 의원이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 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의원이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제99조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 1.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자문위원회 설치) 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 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 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시작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여행 도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의 제착·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서 제착되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자료 요청 등)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심의·의결의 결과 통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자문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출석한 위원, 회의 안건 및 심의・의결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1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2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교육) ① 의장은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표 1]

###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2조제3항제1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 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 1. 사례금 상한액

가. 의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 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신 고 자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성명		od 21-21	
	직업(소속)		연락처	
금품등을	주소			
제공한 자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일시			
금품등	장소			
수수 내용	금품등의 종류 및 가	.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2합니다.		01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정당			
신 청 자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u>:</u>	활동경비	
					금액		담기관
	합계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円		₹	선원	
참 가 자							
			I		년	월	일
		신경	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익반용지		

■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겉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정당			
제 출 자	4 A 0101=1		017171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호	I
	0 0	7 71	0 0	-	11 <i>0</i> -	
활동의원						
	활동목적					
활동개요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강원특별 제출합니다.	자치도의회의원 행동2	y령 제13조제2항의 규정 <sup>0</sup>	세 따라 위와 같이 국내의	리 활동!	보고서를	
※ 별첨 : 국내외 ————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인)_
			210mm×297mm[일반	<u>-</u> 반용지 6	0g/m²(재활	- 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자	처리일기	7	
	성명		소속위원회		
	\\\\\\\\\\\\\\\\\\\\\\\\\\\\\\\\\\\\\\		소독위권회 (정당)		
신고자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 교육, 홍보, 토론회, 서	네미나, 공청회			
유형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ео πο	[] 발표, 토론, 심사, 평기	가, 자문, 의결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1회 평균 시간 :		
사례금	총액 <u>천</u> 원 (※ 1회 (교통비·숙박비·식비(실 천원)		천원) <u>원</u>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I	박비·식비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의 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제14조제5항 관련)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소속위원회			
신고자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회의				
하도 이렇	[] 강의, 강연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u>천</u> 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u>천원</u> 별	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u>천원</u>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	또는 인)
		210mm×29	7mm[일반용지	60g/m² (재	 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제6항, 제20조제3항 관련)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0222			
915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금품 (물품)					
반환금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	5빙서류(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 관련)

#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선거구분		역 구 례대표			
	명칭							
영리행위	직 위			영리행위 :	기간			
6년 황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2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신청자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별지	제요호	서신]	(제19조제1항	과려)
	게이포	$\sim 1$		エリエリ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젙	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 리 기 간		6일
	성명		생년월일	<u> </u>		
	직업		연락처			
신 고 자	(소속)		[ [ - 기시			
	주소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피신고자	(정당) 주소					
(신고대상)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회	 로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	고대상)의 행동강령 위	반행위를 신고합니다	구.		
	의와 같이 피신고자(신		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   	고대상)의 행동강령 위 신고자 구하	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월 (서명 또	

■ [별지 제9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TT 0/1 0 0	- L-			
접	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일자	
	성명					
신 고 자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	주소					
	T-L					
	성명					
	직업		연락처			
	(소속)					
금품등을	주소					
제공한 자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1 00				
신고취지 및						
이유						
	01.11					
	일시					
금품등	 장소					
수수 내용						
	금품등의 종류 및 가	о́Н				
	비원어보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반환 일시·장소 및 빙	)법(반환한 경우)				
방법						
<b>ス</b> コヤコ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_	_ (서명 또는	
			210mm×2	297mm[일반용지		

■ [별지 제10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	-----

## 금품등 인도확인서

	성명	소속위원회
인도자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학	확인서	
	성명	소속위	원회	
인도자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획	인합니다.	
		20		

### ■ [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 금품등 관리대장

OI코	신고		五口		7104		신고자			제공자		인도	관리	H 7L	구) 그		OLYL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일/인 도경 위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을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의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작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의견의 제출을"을 "의견 제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교권보호"를 각각 "교육활동 보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작성・보관하여야"를 "작성・보관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6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O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을 7~10명에서 10~20명으로 변경(제2조)
- O 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조문 정비(제5조)
- O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제6조)
- O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규정 정비(제13조)

강워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관, 미래학력담당관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안전복지과"를 "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안전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예산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총무과·예산과·행정과·시설과 및 미래학교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을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시설과장 및 미래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우로두곡4길"을 "두래울문화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  $\cdot$  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자격의 심의위원회란 중 "미래학력담당관"을 삭제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5항 관련)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과학 계열	미래교육과	
외국어 계열	중등교육과	
예술 계열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체육 계열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	중등교육과	

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학력분과	10명	정책기획과,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예산과	유초등교육과	<ul> <li>유아교육 및 지원</li> <li>교육과정 운영 지원</li> <li>기초·기본 학력지원</li> <li>대입 진학</li> <li>교육정책 및 업무</li> <li>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li> </ul>
진로분과	10명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시설과 미래학교지원과	중등교육과	<ul> <li>○ 진로·직업교육</li> <li>○ 과학정보 · 영재교육</li> <li>○ 특수교육</li> <li>○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li> </ul>
인성분과	10명	교육지원과, 인성생활교육과,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 인성·생활·시민교육 ○ 체육교육 ○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 ○ 학부모활동지원
복지분과	10명	정책기획과, 미래교육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인성생활교육과, 예산과, 행정과	안전복지과	<ul> <li>교육복지</li> <li>돌봄방과후학교</li> <li>보건영양교육</li> <li>학생학교·재난 안전</li> <li>교육활동보호 지원</li> </ul>
행정분과	10명	감사관,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시설과	시설과	<ul> <li>부서 소관 모든 시설사업</li> <li>교육환경개선사업</li> <li>감사업무</li> <li>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li> </ul>

# [별표 4]

사무분장표(제42조 관련)

#### 1. 본청

구분	사무분장
공보담당관	1. 강원교육 언론동향 분석 2.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 취재활동 지원 3.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4.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감 및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6. 강원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7. 강원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 등)제작·보급 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 및 운영 9. 강원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10. 출입 기자 관리 및 브리핑실 운영 11.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감사관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종합감사 3. 특정감사 4. 감사원·교육부·감사위원회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5. 국정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6.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 7. 적극행정 제도 운영 8.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9.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10. 비위·진정·청원 등 사안처리 11. 감질근절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13. 교무·학사 감사 기획 14. 일상감사 15. 재무감사 16.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17. 민원 신고센터 운영(부패, 부조리, 공익) 18. 손·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 19. 공직자 생역사항 신고 및 공개 20. 공직자 제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1. 공직기강 확립 22.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 23. 공공재정환수법 제도 운영 24.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25.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26. 성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구분	사무분장
	27.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28.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29. 본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30. 본청 성고충심의위원회
	1. 교육정책 전반 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3.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4.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5.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관리
	6.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 운영
	7.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 회의 운영
	8. 부서 간 업무조정
	9. 시도교육청 평가
	10. 교육행정기관 평가
	11. 학교평가
	12.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13. 학교장·원장 워크숍 및 협의회
	14. 교감·원감 워크숍 및 협의회
	15. 남북교육 교류 추진
	16.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17.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8. 정부혁신
정책기획과장	19. 국정과제
	20. 교육정책 조사
	21. 정책실명제
	22. 교육정책사업정비
	23.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24.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25. 자율학교 지정・고시
	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운영 총괄
	27.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
	28. 신년 인사말씀 및 시정연설문 기획·작성
	29.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교육분야 추진
	30. 함께학교 운영 총괄
	31. ESG 기획 및 조정
	32. 빅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지원
	33.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 관리
	34. 교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35.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36. 교육회복 업무 총괄(심리정서 지원 포함)
	37. 학교업무정상화(학교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구분	사무분장
	38. 더배움공동체 기획 운영
	39.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원격직무연수 기획 지원
	40. 교무행정사 관리
	41. 교육기부 활성화
	42.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4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44. 교육활동 중 형사고소 된 교원 법률지원
	45.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 교육감 의견 제출
	46. 교육활동 관련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47.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
	48. 강원특별법 지역별 협의체 운영 등 활성화 방안 시행
	49.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분권 추진
	50.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51. 시·군의회 및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
	5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53.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따른 대외협력
	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55.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56. 대학협력(지역협력관, 교육혁신협의회)
	57.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60. 교원단체 교섭·협의 및 지원
	61.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62. 교육공무직(강사직종 포함)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63.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1.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2. 강원학생향상도평가
	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문항 개발 위원 구성 및 운영
	4.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 시행
	5.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6. 강원 수능형 문항분석 연구회 구성 및 운영
	7. 전환기 이음교육 교과학습진단 문항 개발 보급
미래교육과장	8. 전환기 이음교육 인적성진단도구 지원
	9. 강원학생 학력 연구 분석
	10. CBT 기반 평가 모형 개발
	11.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운영
	1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운영
	13. 국제수준(PISA, TIMSS, ICILS, PIRLS)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14. 디지털 전환 교육혁신 종합 계획 수립
	15.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16.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사업 총괄

구분	사무분장
	1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18. 교원의 AI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지원
	19.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전공 지원
	20. 예비·현직교원 대상 AIEDAP 연수 운영
	21.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22. 교육과정 기반 SWAI운영교 지원
	23.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24. 찾아가는 AI교실 운영
	25.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운영
	26. AI정보교실 현대화 사업 지원
	27.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 운영 지원
	28. 교원의 자율적인 지식공유활동 플랫폼 지식샘터 운영 지원
	29.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30. AIEP 시범(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
	31. AIEP 교원연수프로그램, 설명회 운영
	32. AI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33. AI 기반 서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34. CBT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
	35.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36. 과학기자재 관리
	37. 데이터기반 학생주도 과학수업 운영
	38. 심화과학반 운영
	39.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운영
	40. 과학실 안전점검단 운영
	41. 과학교육지원단 운영
	42. 발명실무원 운영 관리
	43. 과학실험실 운영
	44. 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및 강원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
	45.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운영 관련
	46.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47. 사이버학습서비스 운영 지원
	48. 과학·영재·정보 연구학교 운영 지원
	49. 영재교육기관 운영 관리
	50.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51. 교사관찰추천제 연수 및 운영 관리
	52. KAIST강원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53. 창의산출물발표대회 운영
	54.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원
	55. 영재올림피아드 운영
	56. 지역연계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57. 정보보호영재교육 지원
	58. 발명교육센터 운영 관리

구분	사무분장
	59. 융합형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운영
	60. 학교내무한상상실 운영
	61. 융합교육(STEAM) 클럽 운영
	62. 교육정보프로그램 운영
	63.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 정보화 교육 일반
	64. 학교 정보화기기(PC, 노트북, 영상기기) 보급 및 관리시스템 운영
	65.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66. 제1·2·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 지도
	67. 학내 유무선망 구축 운영 지원
	68. 과학·정보·발명 분야 현장지도 연구발표대회 운영
	69. 디지털인프라(학생교원 스마트 단말기, 충전함, 전자칠판) 보급
	70. 교육저작권 및 수업지원 목적 저작권 업무
	7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운영 총괄
	72. 학교 유무선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73. 학생 스마트단말기 SW 보급 및 기능개선(MDM, 유해차단솔루션 등)
	74. 디지털인프라 점검 개선
	75. 디지털튜터 및 테크센터 운영
	76.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 연수 운영 지원
	77. 행정기관 정보화기기(PC, 노트북) 보급 사업 추진
	78. 신설학교 컴퓨터실 기자재 지원
	79. 국제교류 관련 업무 총괄
	80. 외국어·국제계열의 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81. 외국인학교 신설 지원 및 관리
	82.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업무 총괄
	83. 국외 유학 정책 기본 계획 수립(초·중·고) 및 업무 총괄
	84. 개발도상국 교육(해외 교육정보화)지원 총괄
	85. 국제교류 업무(국제교류 MOU 체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86. 학생 국제교류
	8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총괄
	88.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교육 운영
	1. 재난안전 업무 계획·운영·평가 총괄(각 부서별 소관 안전 업무 제외)
	2. 국가재난(폭염, 황사, 오존 등 자연재해 포함)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3. 재난안전 관계기관 협업 홍보 관리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학생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안전복지과장	6.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7. 안전체험시설 활용 학생 안전교육
	8.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홍보
	9. 학생안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ㆍ홍보 관리
	10. 학생 사망사안 업무
	11.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

구분	사무분장
	12. 학생보호인력 운영
	13. 통학차량 안전요원관리(유·초·특 포함)
	14.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
	15. 교통분야 안전관리
	16. 안전유관기관 협력
	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8.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운영
	19.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20.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총괄 및 학비지원
	21.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2.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지원
	23.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24. 진로활동지원금 지원
	25.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관련 업무 지원
	26. 학생 교복비 지원 및 관련 업무
	27. 교과서 주문공급 및 무상지원
	28. 일반고 및 교육부 지정 기숙형 공립고 운영 지원
	29. 학교 기숙사 통계자료 관리
	30.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운영
	31. 교육급여 업무
	32. 강원교육장학회 운영
	33. 외부 장학금 업무 지원
	34. 꿈사다리 장학금 운영
	35. 교육환경 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
	36.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37. 교육환경평가
	38.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39. 환경위생 관리(공기질, 먹는 물, 소음 등)
	40.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41. 안전보건교육
	4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43.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44.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4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4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47.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48. 작업장 환기설비 점검
	49.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추진
	50.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관리
	52. 안전보건 목표 및 운영방침 설정 및 관리
	53. 비상대비업무

구분	사무분장
	54. 을지태국연습계획 및 실시 55. 충무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56. 비밀 및 암호자재관리 57. 비밀취급인가자관리 58. 보안업무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분석·평가 59.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업무 60. 보안감사 61. 보안교육 62. 사회복무요원 관리 63. 직장민방위대운영
교육지원과장	1.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및 조직 관리 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3. 한시기구 설치 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 각종 위원회 관리 6. 제안제도 운영 7. 행정제도 개선 8. 간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운영 9. 의회협력 일반 10.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11. 급식 컨설팅 운영 12. 천환경 급식 식재료 확대 1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및 계약 관리 14. 학교급식은영 평가 15. 급식위생·안전관리 16. 학교급식 경비 지원 17. 기타 급식비 지원 18.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 추진 19.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리 20. 작속기관 급식업무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운영 22.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및 관리 23. 평생교육사료관 운영 지원 24. 독서진흥 및 문화활동 지원 25.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지원 26.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27.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원 접수 및 상담 28. 평생교육시설 지원 2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30.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지도 및 감독(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3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구분	사무분장
	32.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33. 교육문화관(분관 포함) 운영 총괄
	34.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운영
	35.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운영
	36.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
	1. 초등장학
	2. 초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3.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4. 초등 학적관리
	5. 초등 교수학습 평가
	6. 초등 교수학습방법 지원
	7. 계기교육
	8. 학습준비물 경감 지원
	9. 초등 창의적체험활동
	10. 초등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11.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12.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관리(초등)
	13.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
	14. 경계선급학생 선별 및 지도
	15. 초·중 이음교육
	16. 초등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17. 초등 기초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8.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지원
유초등교육과장	19.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20.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교육 증진
	21. 협력교사제 운영
	22.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23. 초등학교현장지원단 운영
	24. 기초학력지원(초등수학, 초등영어)
	25. 맞춤형 교과보충 지원(초등)
	26. 초등 학력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27.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28. 학력향상 교육지원청 지원 29.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30. 신증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놀이시설 포함) 3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인력관리 포함)
	32.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
	33.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3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
	35. 유치원 평가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 총괄
	37. 초빙·공모제 운영(유·초)

구분	사무분장
	38.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유·초)
	39. 교육공무원 임용(유·초)
	40. 교육공무원 전보(유·초)
	41. 교육공무원 휴복직 관리(유·초)
	42. 교육공무원 파견관리(유·초)
	43. 보직교사 및 겸임교사 관리(유·초)
	44. 장애인교원 현황 관리(유·초)
	45. 담임배정 현황 관리(유·초)
	46. 시간선택제 교원관리(유·초)
	47. 교육공무원 호봉관리(유·초)
	48. 교육공무원 국·공립 및 시도간 인사교류(유·초)
	49.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명부 작성 관리(유·초)
	50. 인사담당자 실무연수 운영(유·초)
	5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유·초)
	52.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운영(유·초)
	53.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리(유·초)
	54. 보결전담강사 운영(유·초)
	5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간
	56.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유·초)
	57.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유·초)
	58. 스승 찾기 관련 업무(유·초)
	59.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유·초)
	60. 교원능력개발평가(유·초)
	61. 교육공무원 일반고충심사위원회 운영(유·초)
	62.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유·초)
	63.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정원 수급관리(유·초)
	64. 교육공무원 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유·초)
	65. 교육공무원 퇴직관리(유·초)
	66.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유·초)
	67.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유·초)
	68. 교육공무원 상훈관리(유·초)
	69. 교육실습 학교 운영(유·초)
	70.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초등)
	71. 스승의 날 포상(유·초)
	7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유·초)
	73. 초등 사립교원 정원관리
	74.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지침관리
	75. 교(원)감 면접고사 운영(유·초)
	76. 교육전문직원 선발(유·초)
	77.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유·초)
	78. 수석교사 선발 및 재심사(유·초)
	79.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유·초·중·특)

구분	사무분장
	80. 신규교사책임지원제(유·초)
	81. NEIS 연수 이수 결과 처리(유·초)
	82. 교원 인사혁신 업무
	83. 교육공무원 테마국외연수 운영(유·초·중·특)
	84. 대학원 및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유·초·중·특)
	85. 교육공무원 복지(유·초·중·특)
	86. 교육공무원 자격증 관리(유·초)
	87. 질환교원 관리
	88. 유보통합 추진 방안 계획 수립
	89.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90. 유보통합 서비스 격차 완화 추진
	9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현황(교육-보육, 방과후 운영) 분석 및 실사
	92. 유보통합 정책 연구 추진 및 연수 기획
	93. 유보통합 추진 지역교육청 컨설팅 기획
	94.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기획 및 분석
	95.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96.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및 특성화활동 분석
	97. 지역특색 교육과정 · 보육과정 운영안 기획
	98.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현황 분석
	99. 보육 교직원 인사 및 자격 관리 분석
	100.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 수렴
	101. 유보통합 정책 홍보 계획 수립
	102. 이관 준비 협의체(실무협의TF팀, 자문위원) 운영
	103. 유보통합 조직 인수(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군)청사업 등)
	104. 권역별 지방 단위 이관 준비 협의체(TF) 구축 및 운영 지원
	105. 보육 업무 조직·인력 이관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106. 도청 및 시군 보육 예산 이관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107.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문서 이관
	108.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109.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분석
	110. 보육 통계 관리
	1. 중등장학
	2. 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3.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4. 중등 교수학습 평가
	5. 중등 교수학습방법 지원
४० मम्	6. 중등 창의적체험활동
	7. 수석교사제 운영
	8. 미이수 과목 이수 지원
	9. 인정도서 개발 업무 총괄
	10. 자유학기제 운영

구분	사무분장
	11.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13. 중등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14. 공교육정상화 업무
	15. 고교학점제
	16. 일반고 역량 강화
	17. 역사교육과정
	1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및 평가 지원
	19. 수학교육 일반
	20. 수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수학 관련 행사 운영
	22.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 일반
	23.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
	24.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25. 현장체험학습(중등)
	26.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관리(중등)
	27. 학습지원튜터제 운영
	28.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29. 중·고 이음교육
	30. 중등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31. 맞춤형 교과보충 지원
	32. 학력향상 학교현장지원단 운영(중등)
	33. 사교육 경감대책
	34.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35. 전 · 편입학 관리
	36. 중등 학적관리
	37.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38. 중등 학력 향상 종합 계획 및 지원
	39.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 거점형기숙형고교 운영 지원
	41. 강원형농어촌자율학교 운영 지원
	4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 지도
	43. 초중등 진로교육 운영
	4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5.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제 운영
	46. 고교입학전형 관리
	47.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48. 대학진학 지원
	49.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50.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운영 총괄
	52. 공동실습소 운영

구분	사무분장
	53.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54.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55. 미래농업선도고교 운영 지원
	56.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57.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
	58. 직업교육경진대회 운영
	59. 직업교육 실습실 관리 및 기자재 지원
	60. 직업교육 일반
	61.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62.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63.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도
	64. 과정평가형 자격체제 운영 지원
	65. 직업계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66.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
	67. 직업기초능력 평가 운영
	68. 직업교육 학점제 운영 지원
	69. 취업지원센터 운영
	70. 초빙·공모제 운영(중등·특수)
	71.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중등·특수)
	72. 교육공무원 임용(중등·특수)
	73. 교육공무원 전보(중등·특수)
	74. 교육공무원 휴복직 관리(중등·특수)
	75. 교육공무원 파견관리(중등·특수)
	76. 보직교사 및 겸임교사 관리(중등·특수)
	77. 장애인교원 현황 관리(중등·특수)
	78. 담임배정 현황 관리(중등·특수)
	79. 시간선택제 교원관리(중등·특수)
	80. 교육공무원 호봉관리(중등·특수)
	81. 교육공무원 국·공립 및 시도간 인사교류(중등·특수)
	82. 중등 상치교과 해소 강사 지원
	83. 교원 특별채용(중등·특수)
	84.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명부 작성 관리(중등·특수)
	85. 인사담당자 실무연수 운영(중등·특수)
	8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87.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88.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리(중등·특수)
	89. 보결전담강사 운영(중등·특수)
	90.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간
	91.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중등·특수)
	9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중등·특수)
	93. 스승 찾기 관련 업무(중등 · 특수)
	94.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중등·특수)

구분	사무분장
	95. 교원능력개발평가(중등·특수) 96. 교육공무원 일반고충심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97.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중등·특수) 98.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정원 수급관리(중등·특수) 99. 교육공무원 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중등·특수) 100. 교육공무원 퇴직관리(중등·특수) 101.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중등·특수) 102. 교육공무원 북무관리(중등·특수) 103. 교육공무원 상훈관리(중등·특수) 104. 교육실습 학교 운영(중등·특수) 105.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중등) 106. 스승의 발 포상(중등·특수) 10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중등·특수) 108. 사립교원 인사 및 정·현원관리(중등·특수) 10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지침관리 110. 교(원)감 면접교사 운영(증등·특수) 111. 교육전문직원 선발(중등·특수) 112.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중등·특수) 113. 수석교사 선발 및 재심사(중등·특수) 114. 신규교사책임지원제(중등·특수) 115. NEIS 연수 이수 결과 처리(중등·특수) 116. 교원 연수혁신 및 활성화 지원(유·초·중·특) 1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총괄 118. 교육공무원 자격증 관리(중등·특수)
인성생활교육과장	1. 인권감수성교육 2. 인성교육 3. 청소년근로권리보호교육 4. 시민교육 5. 학생자치 6. 경제교육 7. 독도교육 8. 통일교육 9. 청소년단체 운영 관련 10. 학교환경교육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운영 총괄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운영 총괄 13. 이승복기념관 운영 총괄 14. 학교생활교육 지원 15.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16. 학교선도위원회 지도 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구분	사무분장
	18.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19.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20.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21.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22. 학교폭력관련 유관기관 연계활동
	23. 가정폭력 업무
	24. 아동학대 업무
	25. 학생 도박 예방교육
	26. 보건교육기획 및 추진
	27. 순회보건강사 및 건강실무사 관리
	28. 학생 성교육
	29.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0. 학교 보건 운영
	31. 학생 건강검사
	32. 학생건강증진학교 운영
	33.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34. 학교 보건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35. 순회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36. 학생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3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8. 난치병 학생 관리
	39. 흡연·음주 관련 학생 사안 처리 지원
	40.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41. 학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42. 교직원 결핵검진
	43. 학교양성평등교육
	44. 성별영향평가 업무
	45.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업무
	46. 학교 감염병 관리
	47.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및 점검
	48. 학업중단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49.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50.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지원센터 정보연계
	5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52.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53.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54. 학생상담 및 심리상담 교육
	55. 대안교육 운영 및 지도
	56.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
	57. Wee프로젝트 업무
	58.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및 학생지원 담당 총괄
	59.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구분	사무분장
	60. 학생 자살사안 처리 및 위기관리 지원
	6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결과관리
	62. 가정형 Wee센터 운영(춘천·원주) 총괄
	63. 병원 Wee센터 운영(춘천·원주·강릉) 총괄
	6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총괄
	65.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총괄
	66.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업무
	67.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68. 교육공무직(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관련 업무
	69. 늘봄학교 운영
	70. 방과후학교 운영
	71. 늘봄·방과후지원센터 운영
	72. 방과후 자유수강권
	73. 초등돌봄교실 운영
	74. 교육공무직(방과후학교지원가, 방과후학교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늘봄학교전담사) 관련
	업무
	75. 현장체험학습(초)
	76. 지역교육공동체 운영
	77.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
	78. 지역교육과정 운영 지원 총괄
	1. 체육교육일반
	2. 체육단체지원
	3. 학교운동부운영
	4.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관리
	5.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6. 스포츠강사 관리
	7. 시도단위 체육대회 운영
	8. 전국단위 종합체육대회 운영
	9. 종목별 전국대회 운영
문화체육특수	10.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교육과장	11. 체육시설 수요파악 및 현황 관리(체육관 신축 포함)
正当开る	12.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13.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4. 학생 예술교육
	15. 학교예술강사 지원
	16. 강원학생예술축전 운영
	17.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18.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20. 학교도서관 활성화
1	21.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구분	사무분장
	2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관리 운영
	23. 학교도서관사서 및 학교도서관실무사 관리
	24. 강원예술고등학교 운영 지도
	25.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도
	26.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27.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8.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29.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30. 학교장학(특수)
	3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3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33.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34.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35.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36. 특수학교(급) 현장중심 장학 지원
	37. 특수학교(급)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38. 현장체험학습(특수)
	39. 교외체험학습시스템운영 관리(특수)
	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ㆍ지원
	4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4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가족상담) 지원
	43.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4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 배치
	45.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4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47. 특수교육지원 교육공무직(치료사, 장애영아지도사) 연수
	4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병원학교, 원격수업)
	49. 장애학생 인권보호
	50.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51.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1. 총무일반
	2. 주·월간 업무보고
	3. 당직운영
	4. 공용차량 정수배정 및 본청 차량 운용
	5. 본청 청사 및 관사 관리
	6. 교육감 정무활동 지원 및 관리
총무과장	7. 회의 및 행사 관리
	8. 행정국장 협의회 운영
	9. 공직선거 관리
	1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11. 교육감 보좌 및 일정 관리
	12. 지역·시민사회단체 소통

구분	사무분장
1 년	1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 관리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총괄
	1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관리
	1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고충처리
	1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관리
	1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성과상여금
	1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징계처리
	2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국외연수
	22.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23. 공무원 복지 지원
	24. 공무원 연금 업무
	2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6.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7. 행정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28. 공공데이터 개방ㆍ관리
	29.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30. 교육통계
	31. 본청 홈페이지 구축 · 운영
	32.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33.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
	34.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35. 전산담당공무원 연수
	36.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전산 운영 지원
	38. 정보보안
	39. 개인정보보호
	40. 스쿨넷서비스 구축 총괄
	41.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지원
	4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43.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44. 정보공시 운영
	45.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4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 관리자)
	47. 전자문서 유통 관련 시스템 운영
	48. 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시스템 지원
	49. 전자이미지 공인 파일 관리
	50. GWE메신저 운영
	51. K-에듀파인 자료집계 시스템 운영
	52.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53. 행정정보공동이용
	54. 공무원증 발급

구분	사무분장
	55. 행정서비스헌장관리 56. 정보공개제도 운영 57.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 지원 58. 기록관리제도 및 기록관 운영 59. 단위과제 및 기록관 기준표 운영 60. 본청 속기 지원 61. 공인관리 62. 문서실 운영 63. 청원제도 운영 64.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수업지원 외)
예산과장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 지방교육제정투자사업 십사 및 관리 3. 국고보조금 관리 4. 지방보조금 관리 5. 성인지 및 성과에산제도 운영 6. 지방교육제정분석 및 제정효율화 추진 7.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관리 8. 중기지방교육제정공시 운영 및 관리 10.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관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 학교회계 예·결산 지원 및 관리 13. 주요 재정사업평가 14. 학교회계제도 운영 15. 비법정전입금 관리 16. 참여예산제 운영(주민참여예산 및 학교참여예산) 17. 교육투자 실태조사 18. 기금 총괄 관리 1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20. 학교발전기금 관리 21. 학교법인 관리 22.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23.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24.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25. 유아학비 지원(외국 국적 유아 포함) 26. 유치원 원비 안정화 업무 27. 사립유치원 제무회계 업무 28. 사립유치원 전이 및 인건비 지원 29. 유치원 입하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31. 사립유치원 전드에등파인 운영

구분	사무분장
	32. 교육공무직 종합관리 계획 수립
	33. 교육공무직 인력진단 및 분석
	34.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종 정원 관리
	35.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
	36. 교육공무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37.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38.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39.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40. 교육공무직 장애인고용확대 및 고용부담금 관리
	41.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42.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43.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및 재배정(무기계약직종)
	44.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무기계약직종)
	45.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및 실태 점검
	46.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47. 교육공무직 임금 교섭
	1. 각급학교 설립ㆍ폐지 및 이전
	2. 학교용지 확보
	3. 학급 배정 및 편성
	4. 학생배치계획
	5. 초중학교 의무취학
	6.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
	7.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관리
	8. 특수지 관리
	9. 통합운영학교 관리
	10. 학생 통학여건 개선(유·특 포함)
	11. 통학차량 지원(유·특 포함)
	1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행정과장	13.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축
	14. 교육지원청 이전·설립에 관한 사항
	15. 대안학교 설립ㆍ폐지 및 이전
	16.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ㆍ폐지 및 이전
	17. 공립유치원 설립ㆍ폐지 및 이전
	18. 사립 학교 설립ㆍ폐지
	19. 유아배치계획
	20. 유치원 학급 편성
	21.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
	22. 계약업무
	23. 교육금고 관리
	24. 급여 관리(연말정산 포함)
	25.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구분	사무분장
ी स	26. 세무관리
	2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28. 재무회계 결산
	29. 채권압류금 관리
	30. 회계운영지침 관리
	31.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업무
	32. 에너지 절약 업무
	33. 교육비특별회계 출납 및 결산
	34. 강원교육사랑카드 운영 관리
	35. 발주계획 설명회
	36.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0. 국 ' 등  제 제권의 원니 및 시판 37. 관사 관리 · 운영
	38. 물품의 관리 및 처분
	30. 월급기 전기 및 시판   39.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면제
	39. 역교 구립료 및 법칙교의 역정 및 전세 40. 지방채 차입 및 상환
	40. 시장제 사업 및 장한 41. 채권 관리
	41. 세년 단디 4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43.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44.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45.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46. 법률자문 및 상담
	47. 고문변호사 운영
	48. 법무행정 일반
	49. 법제 심의 및 관리
	1. 시설사업계획 수립
	2. 교육환경개선 사업
	3.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 체육관 개·보수
	6. 다목적실 신축 및 개·보수
	7.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8. 기술직 및 시설관리직연찬회 운영
	9. 신설ㆍ이전사업 시설사업비 검토
시설과장	10. 주요시설사업 추진상황 관리
	11. 석면안전관리
	12. 유아·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13. 교육시설 환경 분야 업무
	14. 내진보강종합계획 수립·시행
	15. 교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시행·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안전사고위험시설 관리
	17. 노후시설 정밀점검
	18. 국가안전진단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100 P   C   C   C   C   C   C   C   C   C

구분	사무분장
TE	19. 창호안전시설 업무 20.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21. 샌드위치 건물해소 사업 22.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23. 2종·3종 시설물 지정·관리 및 FMS시스템 관리·운영 24.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운영 25. 교육지원청 증축·개축에 관한 사항 26.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27. 도시계획관련업무 28.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29.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30.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31. 학교시설 건축승인 32.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업무 33. 친환경에너지시설 관련 업무 34.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 35.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에듀빌) 업무 추진 36.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 37.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 38. 시설사업 만족도 관련 업무 39. 교육시설 자체감리 관련 업무 40. 교육시설사업 단가에 관한 업무 41. 실시설계 TF팀 운영관리
	42.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 43.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방안 44.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업무 45.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46. 교육시설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7.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하자 관리 48. 하자조사·분석관련 업무 49. 본청 및 직속기관 건축협의 50.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미래학교지원과장	1.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팀 총괄 2. 행정업무선진화 3. 구육성회직 운용 4.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5. 학교복합시설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6.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사업 추진 7. 학교복합시설 사업 업무협약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 8. 학교복합시설 추진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9.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사업 행정절차 지원(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10. 학교복합시설 사업 사전(건축)기획 업무 지원

구분	사무분장
	11.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사업 예산교부 및 사업비 정산
	12.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13. 학교복합시설 사업 역량강화 및 홍보
	14.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15.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대상학교 타당성 검토
	16.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대상학교 선정
	17.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미래학교 조성위원회 구성ㆍ운영
	18.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사전기획 추진에 관한 업무
	19.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교육 및 공간기획 컨설팅
	20.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1.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임시교사 공급 지원
	22.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전환준비금 관련 업무
	23. 강원형 학교시설 사업성과 평가·환류
	24.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 행정절차 추진(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축심의)
	25. 학교급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사전기획 운영 계획 수립
	26. 현장지원단 운영 및 사전기획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7. 교육과정 연계 사전기획 학교방문 사전협의회 운영 지원
	28. 교육기획 운영 매뉴얼, 안내서, 연수자료 제작 및 배포
	29. 사전기획 업무담당자(학교, 공간기획가 등) 대상 교육기획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 운영
	30. 영역 단위(실별) 공간혁신 사업부서 업무 지원
	31. 강원건축사회 건축사 대상 사전기획 연수 및 홍보
	32. 공간재구조화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33. 공간재구조화 대상학교 선정 기준 수립 및 공모실시
	34. 공간재구조화 국고보조금 및 시스템관리 업무
	35. 공간재구조화 전환준비금 지원
	36. 공간재구조화 임시교사 공급 지원
	37. 공간재구조화·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추진 현황 관리
	38. 공간재구조화 컨설팅 및 현장실사, 민원처리 업무
	39.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40. 공간재구조화 조성사업 연구ㆍ기획
	41. 공간재구조화 요소 개발·분석 및 적용 42. 공간재구조화 사업성과 평가·환류
	43. 공간재구조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44. 공간재구조화 행정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축심의) 추진
	45.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고시
	46.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지원
	47.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48.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운영
	49.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50. 공간재구조화 BTL사업 운영분야 협상 추진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연구부장	1.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분석 2. 교육과정 지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교재 개발 4.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지원 5. 인정도서 수정·보완 및 심의 6. 연구학교 운영 7.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 8. 강원교육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9.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수행 10. 현장교원 연구 지원 11.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12.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13. 연구보고서 및 연구학술지 발간 14. 민주적 학교문화 연구 지원 15. 공동연수과정 운영 16. 강원교육액서 발간 17. 강원교육연구회 지원 18. 교원 책 출판 지원 19. 학생성장 및 정책평가 연구
총무부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구분	사무분장
교원연수부장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 10. 연수생의 등록ㆍ편제 11. 연수생의 학적 관리 12. 연수 진행 및 홍보 13.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14.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 15. 원격연수 16.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7. 교육과정 편성 및 외래강사 초빙
행정연수부장	18. 연수기자재 관리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수(이하 "행정연수"라 한다)의 기획 및 조정  2.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5. 행정연수 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  6. 행정연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8. 행정연수 생활관 운영 및 관리  9. 행정연수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0. 행정연수 기자재 및 분임물품관리  11. 행정연수부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2. 행정연수부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
총무부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원장	15. 그 밖에 나는 구시에 녹아시 아니아는 사용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구분	사무분장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6. 연수생의 근태 파악 7. 연수 대상자 지명 8. 연수생의 등록 · 편제 9. 연수생의 학적 관리 10. 연수 진행 및 홍보 11.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 · 제작 및 관리 12.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3. 연수기자재 관리 14.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구	'분	사무분장
과학정	보부장	1. 교육제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과학·수학·정보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4. 과학·수학·정보교육 행사 운영 및 지원 5. 과학·수학·정보·실과(기술·가정)·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 6. 공동연수과정 운영 7. 과학·수학·정보·영재·환경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10. 과학·수학·정보·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1. 과학·수학·정보교육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 12.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연구·경진대회 13. 교원의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등아리 및 연수·연찬활동 지원 14.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출판·인쇄 1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정보영제교육원 운영 17.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1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9. 사이버학습 운영 20. 디지털 교육자료 관리 21.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22.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23. 과학실험실 운영 24. 교육자료전 운영 25. 발명교육 운영 26. 학교도서관 관리 및 운영 28.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29.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 30. 원격교육 지원(공공 LMS, 콘텐츠 관리 등) 31.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교육에 관련 사항
총무부장	정보지원 과장	1. 학교(기관) 통합 누리집 구축·운영 2. K-에듀파인시스템 구축·관리 3.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리 4. 교육포털시스템 인프라 지원 5. 통합전자도서관 인프라 지원 6. 나이스 시스템 구축·관리 7. 강원나이스 상담센터 운영 8. 나이스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9.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운영 10.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 11.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12.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관리 13. 정보보안 관리·운영 14.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

구분	사무분장
	15.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6. 스쿨넷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17. 클라우드플랫폼 구축·관리 18. 교육정보 기반시설 운영 19. 교육정보시스템 백업·복구 20.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2.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원장	<ol> <li>과학·수학·정보 전시 및 체험교육운영</li> <li>과학·수학·정보 관련 수업 및 교육자료</li> <li>과학·수학·정보 관련 행사</li> <li>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진로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4. 진로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및 지도 5. 진로교육 관련 학습연구년제 특별 연수 운영 6.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교직원·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개설·운영 8. 공동연수과정 운영 9. 진로체험실 운영 및 관리 10. 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 11. 전국나무장난감 축제 운영 12. 진로도서관 운영 및 관리 13. 진로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4. 학교 진로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15. 진로교육센터 운영 16.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관리 17. 기타 진로교육관련 업무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보건실 및 전산실 운영 13.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국제교육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4. 외국어, 국제교육 등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동연수과정 운영 6. 연수(교육)생 선정·관리·평가·수료 등에 관한 사항 7. 교수(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등)요원 채용 및 지원 8. 국내외 연수기관 선정·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연수(교육) 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0.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글로벌 역량 개발 지원 11. Talk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국제교류협력사업 운영 13. 글로벌마인드함양사업 운영 14. 세계시민교육 15.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 16. 개발도상국 교육(해외 교육정보화)지원 사업 1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학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4.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공동연수과정 운영 5. 유아교육 정보제공 6.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7. 유아교육 연혁관리 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학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치유 교육과정 운영 5. 교육(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6. 교육생의 교육평가 및 추수지도 7.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 연수 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학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Wee스쿨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교육(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육생의 교육평가 및 추수지도 8.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9.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원장	<ol> <li>학생 통일교육 기획 및 운영</li> <li>교직원 대상 통일연수 기획 및 운영</li> <li>통일교육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평가</li> <li>통일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li> <li>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구분	사무분장
원장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분원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원장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2. 교육문화관

구분	사무분장
문헌정보과장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료실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4.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5. 독서 및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지원 6. 자료의 조사·연구·통계 및 제적 7. 각종 독서교육 활동 지원 8. 자료의 상호대차 9.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10. 교육사료 수집·보존·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관장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3.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13.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

구분	사무분장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학교장학
	3.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4.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5. 검정고시 관리
	6. 국제교류 협력 업무
	7. 장학금 지원 관리
	8. 교육기부
	9. 학생안전교육 업무
	10. 학교업무정상화
	11.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12. 컨설팅 활동
	13.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14. 교육회복 지원
	15. 교원단체 업무
	16. 교수학습 자료 관리
	17. 교실수업 개선 지원
	18.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0.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21.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22.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교육과장	23. 교원 전문성 신장
	24.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5. 협력교사제 운영
	26.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27. 방과후학교 운영(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지원 포함)
	28.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29. 돌봄교실 운영
	30.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1. 유치원 복지 지원
	3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3.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 조사 처리
	35.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36. 현장체험학습
	37.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38. 고교입학전형 관리
	39. 대입수능 관련 업무
	40. 전·편입학 업무
	41. 진로진학 지도
	42. 외국어교육
	43. 직업교육 운영
	44. 고교학점제 업무
	45.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구분	사무분장
	46. 학부모지원 일반
	47.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48. 문화예술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59. 득구교육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63. 과학교육
	64. 영재교육
	65. 학교급식 업무
	66.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67.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관리 지원
	1. 공인관리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단위기관 내 정원관리
	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9. 성과관리
	10. 교육통계 관리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레고리카	12. 정보공개 및 공시
행정과장	13.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4. 공무원단체 관리 15. 대외기관 협력
	16. 기관장협의회 운영
	10. 기원생합의의 눈장 17. 민원관리
	18.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9. 재난안전 관리
	20. 홍보업무
	2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2. 청렴업무
	23.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4. 총무일반
	25. 청사관리

구분	사무분장
	26.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7. 학생배치 28.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9. 사학생인 관리 30. 사학재정 지원 3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2.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운영 관리 33.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34.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5.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6. 비축무연탄 관리기급 지원 37. 유아학비 지원 3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4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1. 세출애산 집행 및 결산 42.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3. 물품관리 44.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5. 세무관리 46. 세입세출의 현급 관리 47.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8. 재산관리 49. 채권채무 관리 50. 교육시설재난공제관련 업무 51.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52. 정보보호 5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4. 정보화기반 운영 55.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56. 통학편의지원 57. 학교 전체 네트워크망 관리 및 컨설팅
시설과장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3. 교육시설 실태 점검 4. 시설환경 평가관리 5.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7. 우수교육시설 선정 8.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9.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1.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12.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공사내역서 작성 및 공사감독 지원) 13. 학교시설현황 관리

구분	사무분장
	14. 민간투자사업 관리 15. 관급자재 관리 16. 내진관련 업무 17.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8.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19. 교육시설 안전점검 20.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학생지원센터장	1. 생활교육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3. 학교(성)폭력 및 사안 4. 학교폭력 가(괴)해 학생지원 5.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6. 학교선도위원회 지원 7.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8. 흡연·음주·약물오남용·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9. 성교육·성평등 교육 지원 10. 학교보건 업무(보건순회교육 포함) 11. 학교 감염병 관리 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지원 13. 정신건강(정서행동특성)업무 지원 14. 학생자살 위기관리 및 사안처리 15. 위기학생 지원(Wee센터 운영) 16. 학업중단학생 지원 17. 대안교육 18.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19. 상담 및 치유활동 20.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21. 가정행Wee센터 운영(춘천, 원주) 22. 학교밖 청소년 지원 23.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학교지원센터장	1. 학교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강사인력풀 관리 3. 학교장임용 학교인력(기간제교원, 대체인력 등) 채용 지원 업무 4 에듀버스(유·초·중) 운영 및 통학편의 지원 업무 5. 저소득층 지원 6. 교육비(복지) 지원 7. 교과서 업무 지원 8.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미세먼지·라돈·석면·공기질·물관리 등) 업무 9.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10. 지역교육환경보호구원회 운영 11. 산업안전·보건 업무 12. 관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 계약(전기, 소방, 오수) 13. 소규모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14. 기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업무

# 14. 그 밖의 교육지원청

구분	사무분장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학교장학
	3.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4.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5. 검정고시 관리
	6. 국제교류 협력 업무
	7. 장학금 지원 관리
	8. 교육기부
	9. 학생안전교육 업무
	10. 학교업무정상화
	11.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12. 컨설팅 활동
	13.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14. 교육회복 지원
	15. 교원단체 업무
	16. 교수학습 자료 관리
	17. 교실수업 개선 지원
	18.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0.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21.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22.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교육과장	23. 교원 전문성 신장
	24.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5. 협력교사제 운영
	26.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27. 방과후학교 운영(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지원 포함)
	28.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29. 돌봄교실 운영
	30.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1. 유치원 복지 지원
	3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3.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 조사 처리
	35.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36. 현장체험학습
	37.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38. 고교입학전형 관리
	39. 대입수능 관련 업무
	40. 전·편입학 업무
	41. 진로진학 지도
	42. 외국어교육
	43. 직업교육 운영 44. 고교학점제 업무
	44. 고교약검세 업구 45.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0. 위투조시전센터 균형 

46. 학부모지원 일반 47.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48. 문화예술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48. 문화예술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남북교육 교류 추진         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59. 특수교육서비스         60. 특수교육운영 지원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ul> <li>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li> <li>57. 남북교육 교류 추진</li> <li>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li> <li>59. 특수교육서비스</li> <li>60. 특수교육운영 지원</li> <li>61. 체육교육</li> <li>62. 정보화교육</li> </ul>
<ul> <li>57. 남북교육 교류 추진</li> <li>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li> <li>59. 특수교육서비스</li> <li>60. 특수교육운영 지원</li> <li>61. 체육교육</li> <li>62. 정보화교육</li> </ul>
<ul> <li>58. 더나은교육지구 운영</li> <li>59. 특수교육서비스</li> <li>60. 특수교육운영 지원</li> <li>61. 체육교육</li> <li>62. 정보화교육</li> </ul>
<ul><li>59. 특수교육서비스</li><li>60. 특수교육운영 지원</li><li>61. 체육교육</li><li>62. 정보화교육</li></ul>
<ul><li>60. 특수교육운영 지원</li><li>61. 체육교육</li><li>62. 정보화교육</li></ul>
61. 체육교육 62. 정보화교육
62. 정보화교육
(이 기장, 기 이
63. 과학교육
64. 영재교육
65. 학교급식 업무
66. 생활교육
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68. 학교(성)폭력 및 사안
69.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지원
70. 학교선도위원회 지원
71.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72. 흡연·음주·약물오남용·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73. 성교육·성평등교육 지원
74. 학교보건 업무(보건순회교육 포함)
75. 학교 감염병 관리
7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지원
77. 정신건강(정서행동특성)업무 지원
78. 학생자살 위기관리 및 사안처리
79. 위기학생 지원(Wee센터 운영)
80. 학업중단학생 지원
81. 대안교육
82.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83. 상담 및 치유활동
84.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85.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8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리 지원
87. 학교밖 청소년 지원
88.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1. 공인관리
1. 등단단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구분	사무분장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단위기관 내 정원관리
	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9. 성과관리
	10. 교육통계 관리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2. 정보공개 및 공시
	13.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4. 공무원단체 관리
	15. 대외기관 협력
	16. 기관장협의회 운영
	17. 민원관리
	18.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9. 재난안전 관리
	20. 홍보업무
	2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2. 청렴업무
	23.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4. 총무일반
	25. 청사관리
	26.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7. 학생배치
	28.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9. 사학법인 관리
	30. 사학재정 지원
	3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2.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관리
	33.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34.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5.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37. 유아학비 지원
	3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4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1.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2.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3. 물품관리
	44.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5. 세무관리
	4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7.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8. 재산관리
	49. 채권채무 관리
	50. 교육시설재난공제관련 업무
	51.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구분	사무분장
	52. 정보보호
	5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4. 정보화기반 운영
	55.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56. 학교 전체 네트워크망 관리 및 컨설팅
	57.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58.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59. 교육시설 실태 점검
	60. 시설환경 평가관리
	61.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63. 우수교육시설 선정
	64.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65.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66.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67.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68.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공사내역서 작성 및 공사감독 지원)
	69. 학교시설현황 관리
	70. 민간투자사업 관리
	71. 관급자재 관리
	72. 내진관련 업무
	73.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74.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75. 교육시설 안전점검
	76.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77. 학교지원 운영계획 수립
	78. 학교지원 홈페이지 관리
	79. 강사인력풀 관리
	80. 학교장임용 학교인력(기간제교원, 대체인력 등) 채용 지원 업무
	81. 에듀버스(유·초·중) 운영 및 통학편의 지원 업무
	82. 저소득층 지원
	83. 교육비(복지) 지원
	84. 교과서 업무 지원
	85.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미세먼지·라돈·석면·공기질·물관리 등) 업무
	86.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8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88. 산업안전·보건 업무
	89. 관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 계약(전기, 소방, 오수)
	90. 소규모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91. 기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업무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육주장 현장 및 현장 2. 학교장학
   양양교육지원센터장	2. 역교정역   3.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중당포작시컨센터강	5. 연구 및 궁심역보 군정 4. 교수학습자료 관리
	4. 교구역급자료 산다 5. 교실수업 개선 지원
	0. 프린丁宙 세월 의원

구분	사무분장
구분	사무분장  6. 교원 전문성 신장 7. 컨설팅 활동 8.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9. 학적관리 10. 협력교사제 운영 11. 영재교육 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3. 진로진학 지도 14. 고교입학전형 관리 15. 유관기관 교육협력 16. 학교업무정상화
	17.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8. 학부모지원 일반 19.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21.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22.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23.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24. 상담 및 치유활동 25.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26. 민원업무 27.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28. 학교밖 청소년 지원 29.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30.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 15. 이승복기념관

구분	사무분장
관장	<ol> <li>기념관 관리</li> <li>자료 발굴 및 보존</li> <li>자료 전시 및 홍보</li> <li>이승복장학회 운영</li> <li>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 1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구분	사무분장
센터장	<ol> <li>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li> <li>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li> <li>학생선수 훈련 및 학습지원</li> <li>체육지도 관련 연수 운영</li> <li>동계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li> <li>학생선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 제공</li> <li>그 밖에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 ◇ 개정이유 ◇

○ 한시기구의 조속한 종료에 따른 3국 체제의 업무기능별 일원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개편 및 부서별 기능에 맞는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학교 중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O 한시기구의 조기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제3조, 제6조, 제6조의2)
  - 한시기구인 미래학력담당관 및 미래학교추진단 폐지
- 본청 기구 개편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제7조, 제9조, 별표 4)
  - 정책국 소관 부서 신설: 미래교육과
  - 행정국 소관 부서 신설: 미래학교지원과
- O 자치단체 도로명 변경에 따른 직속기관 주소 변경(제14조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도로명 주소 변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개 정	안	
	직종	-, 직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합 계	4,209	7	829	1,126	2,247
총 괄		정 무 직	1		1		
		일 반 직	3,743	7	628	891	2,217
		연 구 직	18		2	16	
		특 정 직	442		193	219	30
		별 정 직	5		5		
정무직		정 무 직 계	1		1		
		교육감	1		1	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모함) 2 29 1,126 1 28 891 2 16 93 219 5 1 1 1 28 891 4 4 4 77 1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일반직계	3,743	7	628	891	2,217
	0.77	소 계	4		4		
	3급	지방부이사관	4		4		
	4급	소 계	18	1	17		
		지방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7	1	16		
		소 계	132	1	51	25	55
		교육행정	97	1	35	7	54
		교육행정 · 행정					
일반직		행정	2		2		
	5급	교육행정·공업·시설	4		2	1	1
		교육행정·행정·공업·시설	14			14	
		교육행정 · 식품위생	2		2		
		사서	7		7		
		공업·시설	6		3	3	
		소 계	955	1	149	176	629
		교육행정	625	1	72	80	472
	6급	교육행정·식품위생	2		2		
	᠐핍	전산	16		7	9	
		사서	32		32		
		공업	14		4	10	

기관별				개 정 안						
	직종,	직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공업·시설	15		2	13				
		식품위생	19		2	17				
		간호	0		0					
		시설	25		11	14				
		운전	65		2	23	40			
		위생·조리	4		1		3			
		시설관리	118		5	9	104			
		기계운영	7		4		3			
		사무운영	13		5	1	7			
		소 계	1,369	3	226	351	789			
		교육행정	862	1	132	203	526			
		전산	34		19	15				
		사서	40		37	3				
		속기	2	2						
		공업	20		3	17				
		공업·시설	17			17				
		식품위생	23		2	21				
	7급	의료기술	1				1			
		간호	2		2					
		시설	41		9	32				
		운전	107		3	20	84			
		위생·조리	4				4			
		시설관리	171		9	22	140			
		기계운영	15		4		11			
		사무운영	29		6	1	22			
		전기운영	1				1			
		소 계	1,261	1	177	339	744			
		교육행정	768		108	228	432			
	8급	전산	11		8	3				
		사서	34		34					
		속기	1		1					
		공업	20		1	19				
		식품위생	10		1	9				

		기관별			개 정	안	
	직종,	직급, 직렬별	총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간호	5		4	1	
		시설	30		1	29	
		운전	162			12	150
		시설관리	192		12	36	144
		기계운영	4				4
		사무운영	18	1	4	2	11
		전기운영	2				2
		농림운영	1				1
		보건운영·사무운영	3		3		
		소계	4		4		
		가군	1		1		
	지 다 커 크 크	비상대비업무	1		1		
	전문경력관 -	나군	3		3		
		학생수련지도	2		2		
		영상제작	1		1		
연구직		연구직계	18		2	16	
	연구사	기록연구사	18		2	16	
		특정직계	442		193	219	30
	일1	반직 3급상당 장학관	2		2		
특정직	일반	직 3급상당 교육연구관	3		3		
777	일1	반직 4급상당 장학관	24		7	17	
	일반	직 4급상당 교육연구관	7		7		
	일반직 5	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6		25	21	
	7	당학사·교육연구사	360		149	181	30
		별정직계	5		5		
	47 112	소계	1		1		
	4급 상당	비서	1		1		
별정직	등그 시나	소계	1		1		
근 이 기	5급 상당	비서	1		1		
	67 Alrl	소계	1		1		
	6급 상당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_							
		기관별		7	개 정	안	
	직종, 조	]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비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 개정이유 ◇

○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강원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O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일반직 6급: 956명 → 955명 (감 1명)
    - · 공업·시설6급 1명 증, 교육행정6급 1명 감, 간호6급 1명 감
  - 일반직 7급: 1,368명 → 1,369명 (증 1명)
    - ・ 교육행정7급 1명 증
  - 일반직 8급: 1,261명 → 1,261명 (변동없음)
    - · 간호8급 1명 증, 교육행정8급 1명 감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3호

#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ㅇ 명 칭: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95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지역개발사업구역 46,570㎡, 구역 외 기반시설 4,206㎡ (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46,470.6㎡, 구역 외 기반시설 4,206㎡
  - 사업내용: 도로, 주차장, 광장, 소광장, 교통광장, 탐방로 조성
  - 사 업 비: 6,670백만 원
-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목 적: 대상지 일원의 산재된 관광자원인 장릉(도깨비)~강변저류지(왕의 정원)~청령포의 벨트화로 영월군 의 신관광 성장축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영월군 지 역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
-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25. 06.
-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영월군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이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 ㅇ 게재생략

5.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통처리계획(변경) : 게재생략

토지이용계획(변경)

7 H		면 적(m²)	7 Hul (m)	비고	
구 분	기정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川 北
합 계	46,570	감)99.4	46,470.6	100.0	
주거용지	20,908	증)115.0	21,023.0	45.2	
상업용지	10,409	_	10,409.0	22.4	
광장용지	3,506	증)89.1	3,595.1	7.7	3개소(기조성1개)
주차장용지	3,165	감)16.7	3,148.3	6.8	2개소(기조성1개)
녹지용지	213	_	213.0	0.5	
하천용지	3,624	_	3,624.0	7.8	
도로용지	도로용지 4,444 감)286.8		4,157.2	9.0	
보행자도로	301	_	301.0	0.6	

-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ㅇ 게재생략
-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ㅇ 게재생략
- 8.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변경): [별첨 1]
- 9.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변경없음)

구 분	교통광장	탐방로
규 모	○면적 3,234㎡	○폭원 1.5~4m, 연장 240m, 면적 972㎡
비용 부담계획	○사업비 : 282백만원 - 국 비 : - - 군 비 : 282백만원	○사업비 : 943백만원 - 국 비 : 824백만원 - 군 비 : 119백만원

- 10.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별첨 2]
- 11. 지형도면,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계획,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033-249-3879) 및 영월군 지역개발실 (☎033-370-21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변경)

# ■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구분	연박	ť	소재지	ગ્રામા	지목	대장당	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ען יי
丁七	기정	변경	오세시	지번	시숙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 비고
합계	50필지	4필지	-	-	-	5,668	5,453.6	5,668	감)214.4	5,453.6	_	-	
변경	1	1	영흥리	1095	대	301	2,370.4	301	증)2,069.4	2,370.4	영월군	-	
신규	-	2	영흥리	1095-1	차	-	1,502.3	-	증)1,502.3	1,502.3	영월군	-	
신규	-	3	영흥리	1095-2	도	-	1,044.2	-	증)1,044.2	1,044.2	영월군	-	
신규	-	4	영흥리	1095-3	공	-	536.7	-	증)536.7	536.7	영월군	-	
제척	2	-	영흥리	1081-2	대	335	-	335	감) 335	-	영월군	-	
제척	3	-	영흥리	1081-5	답	201	-	201	감) 201	-	영월군	-	
제척	4	-	영흥리	1081-14	답	148	-	148	감)148	-	영월군	-	
제척	5	-	영흥리	1081-18	답	45	-	45	감) 45	-	영월군	_	
제척	6	-	영흥리	1081-7	답	243	-	243	감)243	-	영월군	-	
제척	7	-	영흥리	1081-10	답	10	-	10	감)10	-	영월군	-	
제척	8	-	영흥리	1081-15	답	34	-	34	감)34	-	영월군	-	
제척	9	-	영흥리	1081-19	답	25	-	25	감)25	_	영월군	_	
제척	10	-	영흥리	1081-12	답	129	-	129	감) 129	-	영월군	-	
제척	11	1	영흥리	1084-1	대	330	-	330	감)330	1	영월군	-	
제척	12	-	영흥리	1084-12	대	232	-	232	감)232	-	영월군	-	
제척	13	-	영흥리	1084-13	대	126	-	126	감)126	-	영월군	-	
제척	14	-	영흥리	1084-14	전	89	-	89	감)89	-	영월군	-	
제척	15	1	영흥리	1084-67	전	63	-	63	감)63	ı	영월군	-	
제척	16	1	영흥리	1084-15	대	504	-	504	감)504	ı	영월군	-	
제척	17	-	영흥리	1084-68	대	81	-	81	감)81	-	영월군	-	
제척	18	1	영흥리	1084-16	F.	202	-	202	감) 202	1	국(국토교통부)	_	
제척	19	1	영흥리	1084-73	도	37	-	37	감)37	1	국(국토교통부)	-	
제척	20	-	영흥리	1084-17	대	360	_	360	감)360	-	영월군	-	
제척	21	1	영흥리	1084-18	답	307	-	307	감)307	ı	영월군	-	
제척	22	ı	영흥리	1084-70	답	65	-	65	감)65	ı	영월군	-	
제척	23	-	영흥리	1084-74	답	8		8	감)8	-	영월군	-	
제척	24	-	영흥리	1084-33	대	24	-	24	감)24	-	영월군	-	
제척	25	_	영흥리	1084-37	대	335	-	335	감) 335	-	영월군	-	
제척	26	_	영흥리	1084-38	대	337	-	337	감)337	_	영월군	_	
제척	27	_	영흥리	1084-41	대	102	-	102	감) 102	-	영월군	_	
제척	28	_	영흥리	1084-63	대	3	-	3	감)3	-	영월군	_	
제척	29	-	영흥리	1085-2	도	26	-	26	감)26	-	국(국토교통부)	-	
제척	30	_	영흥리	1090-5	도	220	-	220	감)220	-	국(국토교통부)	-	
제척	31	_	영흥리	1090-18	도	38	-	38	감)38	-	국(국토교통부)	_	
제척	32	-	영흥리	1090-21	도	42	-	42	감)42	_	국(국토교통부)	-	
제척	33	-	영흥리	1090-22	도	8	-	8	감)8	-	국(국토교통부)	-	
제척	34	_	영흥리	1093	도	16	-	16	감)16	-	영월군	_	
제척	35	-	영흥리	1093-8	도	6	-	6	감)6	-	영월군	-	
제척	36	_	영흥리	1094-4	전	1	-	1	감)1	-	국(기획재정부)	_	
제척	37	-	영흥리	1094-19	전	2	-	2	감)2	-	국(기획재정부)	-	

719	연1	t t	소재지	ગોમો	기무	대장무	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비고
구분	기정	변경	2세시	지번	지목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刊工
제척	38	-	영흥리	1094-9	대	20	_	20	감)20	-	영월군	-	
제척	39	-	영흥리	1094-10	도	3	-	3	감)3	-	국(국토교통부)	-	
제척	40	-	영흥리	1094-15	도	24	_	24	감)24	-	영월군	-	
제척	41	-	영흥리	1094-23	도	8	_	8	감)8	_	영월군	-	
제척	42	-	영흥리	1094-16	대	19	-	19	감)19	-	영월군	-	
제척	43	-	영흥리	1094-17	대	14	_	14	감)14	-	국(기획재정부)	-	
제척	44	ı	영흥리	1094-18	대	1	-	1	감)1	-	영월군	-	
제척	45	ı	영흥리	1103-3	대	134	-	134	감)134	-	영월군	-	
제척	46	-	영흥리	1103-4	대	60	-	60	감)60	-	영월군	-	
제척	47	-	영흥리	1103-6	대	266	_	266	감) 266	-	영월군	-	
제척	48	ı	영흥리	1103-7	대	18	-	18	감)18	_	영월군	-	
제척	49	ı	영흥리	1103-13	대	21	-	21	감)21	-	영월군	-	
제척	50	ı	영흥리	1103-14	대	45	-	45	감)45	-	영월군	-	

# ■ 구역 외 기반시설 2개소(교통광장, 탐방로)(변경없음)

### ㅇ 교통광장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비고
ੀਦ	선민	조세시	시민	시학	내경 한작(III)	원립한식(III)	성명	주소	1 1111
합계	8필지	-	_	_	6,287	3,234	_	-	
기정	1	영흥리	1085-14	도	2,490	1,628	국(국토교통부)	-	
기정	2	영흥리	1085-3	도	378	378	영월군	-	
기정	3	영흥리	1085-12	도	37	37	영월군	-	
기정	4	영흥리	1092-4	도	31	1	영월군	-	
기정	5	영흥리	1093-7	도	799	630	영월군	-	
기정	6	영흥리	산131-10	도	333	281	국(문화재청)	-	
기정	7	영흥리	산131-4	사	1,105	60	국(문화재청)	-	
기정	8	영흥리	산134-17	도	1,114	219	국(문화재청)	_	

### ㅇ 탐방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m²)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下七	언민	조세시	시민 	시학	네성한역(111)	원립한역(III)	성명	주소	1 비끄
합계	10필지	-	-	-	35,505	972	-	-	
기정	1	영흥리	1083	도	79	8	영월군	_	
기정	2	영흥리	1090-20	도	566	17	국(국토교통부)	ı	
기정	3	영흥리	1090-8	도	258	2	국(문화재청)	-	
기정	4	영흥리	1090-9	도	803	108	국(문화재청)	1	
기정	5	리 영	1094-6	냇	652	166	영월군	1	
기정	6	경 영	1094-21	도	74	26	국(국토교통부)	1	
기정	7	리 영	산134-4	냇	27,879	6	국(문화재청)	1	
기정	8	경 영	산134-19	도	3,388	291	국(문화재청)	1	
기정	9	방절리	6-1	냇	237	8	영월군	1	
기정	10	방절리	산1-11	도	1,569	340	영월군	_	

# [별첨 2]

# 영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V] 2]			1) Ó	주 🤉	ಎ ಎ	
구분 등	트그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	6~10	국지 도로	307 (157)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변경	소로	3	1	6~8	국지 도로	307 (157)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 ( )는 사업대상지 내 편입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6~10m → 6~8m - 연장 : 307m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4호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변경)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인정(변경) 사항을 「같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보유단체 인정(변경)
  - 1. 해당종목: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 2. 보유단체 인정(변경)사항
  - 가. 기 정: 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
  - 나. 변 경: 수동골상여소리민속보존회
  - 다. 변경사유
    - 보유단체 명칭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5호

### 2024년산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용 종자가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을 위한 2024년산 산림청 미고시 종자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4년산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용 종자가격

(단위 : 원/kg)

수 종 명	묘 령	단 가	비고
분비나무	종 자	227,200	
층층나무	종 자	262,800	

※ 위 종자가격은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을 위한 종자 공급에 한함.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6호

###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56,500 m²

###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기간: (기정) 2004년 ~ 2024년 → (변경) 2004년 ~ 2025년

###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

- 시 행 자: (기정)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변경) ㈜반디개발 대표 권혁철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분야별 오염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세부추진계획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 마.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상위계획인 2035 정선군기본계획에 의거 수립(세부사항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ㅇ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用立
합 계	56,500	100.0	
주거용지	28,364	50.2	
주택	26,632	47.1	
근린생활시설	1,732	3.1	
녹지용지	14,700	26.0	
기타녹지	5,494	9.7	8개소
원형보존녹지	8,783	15.5	1개소
소공원	423	0.8	1개소
공공시설용지	13,436	23.8	
주차장	1,413	2.5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65	1.5	4개 노선
도로	9,747	17.3	8개 노선
공급처리시설	481	0.9	1개소
운동시설	381	0.7	1개소
관리시설	74	0.1	1개소
구거	475	0.8	1개소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단지 조성 후 주거용지 등 매각

구 분	단가(천원/m²)	면적(m²)	매각금액(천원)	비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 ㅇ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자. 보건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 전체 사업시행자 소유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2.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정)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변경) ㈜반디개발 대표 권혁철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 나. 사업의 명칭·목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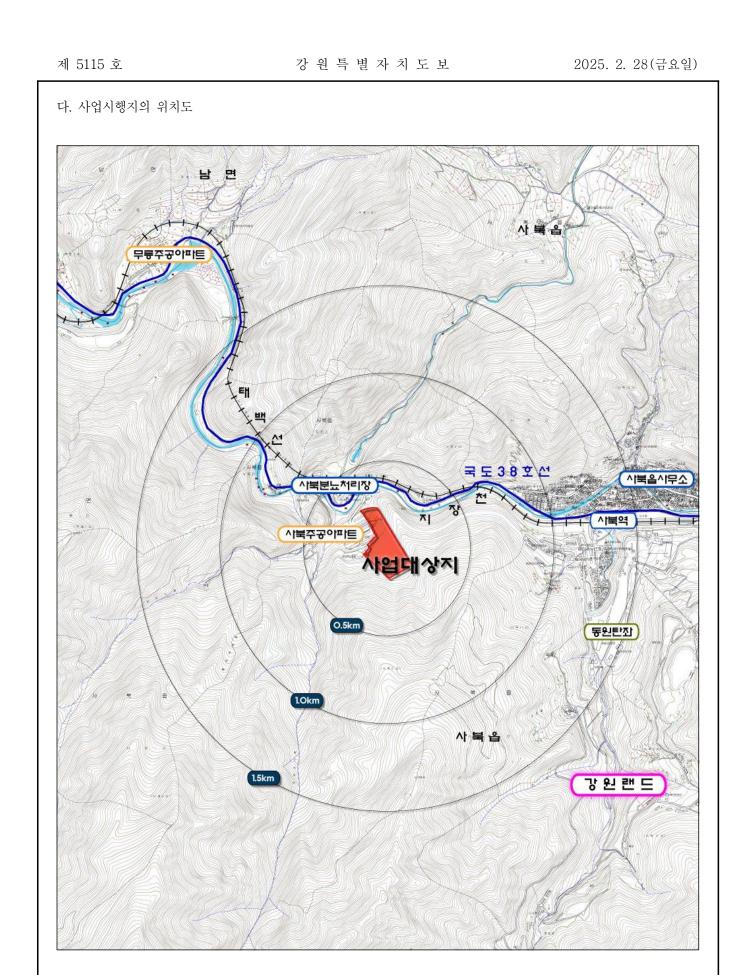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 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56,500m²

○ 시행기간 : (기정) 2004년 ~ 2024년 → (변경) 2004년 ~ 2025년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ㅇ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 재원조달 계획 : 단지 조성 후 주거용지 등 매각

구 분	단가(천원/m²)	면적(m²)	매각금액(천원)	비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 :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토지 소유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4.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지형도면 고시도(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별첨 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연				면조	$(m^2)$		소유자		관계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비고						
								박**	부산 강서구	가압류							
								旦*****	충청북도 보은군	근저당							
					청****	충청북도 청주시	근저당										
	1 사북리 160- 18 산 56,500 56,500			연*****	충청북도 영동군	근저당											
1		λl	F.G. F.O.O.	F.G. F.O.O.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旦*****	충청북도 보은군	지상권								
		30,300	반디개발	등와진 남경도 02-10, 일층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저당 채권압류										
														주****	전라남도 나주시	근저당 채권압류	
					대***	대구광역시	근저당 채권압류										
					북****	경기도 파주시	근저당										
							김**	부산광역시 남구	근저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7호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30차) 변경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계획의 개요(변경 없음)
  - 명 칭: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 o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8개 시·군)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정선군
    - (접경지역 6개 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거점지역 4개 시·군)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 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변경 없음)
  - 목 적
- 지역의 고유자원을 토대로 하여 향후 10년간의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 인구과소지역 내 체류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매개로 광역관광루트 조성 등 시·군 간 연계 강화
-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도 거버넌스 구축
  - o 비 전 : 약동하는 행복강원
- 목 표 : 최고의 관광휴양 목적지로 '늘 찾고 싶은 곳', 제도·정책지원을 기반으로 '투자하고 싶은 곳', 남녀노소 누구나 머물며 '살고 싶은 곳'
  - 전 략
    - 미래 성장동력으로 첨단신산업 육성 및 내륙 발전벨트 조성
    - 품격높은 관광·스포츠거점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조성
    - 지역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거점 조성
    -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 3. 전략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없음)

전 략	주요 권역·축	추 진 방 향
(전략1) 미래 성장동력으로 첨단신산업 육성 및 내륙 발전벨트 조성	내륙중심권 + 문화신산업발전축	○스마트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등 핵심산업 거점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미래 지역성장동력 마련 ○우수한 자연경관 및 관광시설 들과 연계한 다양한 여가문화 자원발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타켓으로 하는 개발추진
(전략2) 품격높은 관광·스포츠거점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조성	환동해권 + 북방경제·해양관광축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관광휴양시설을 정비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확충
(전략3) 지역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거점 조성	고원남부권 + 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 고원, 폐광지역, 동강·서강·강원랜드 등 지역특성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연계발전방안 및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발전 추진
(전략4)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접경지역권 + 평화생태육성축	○ 접경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생태자원과 산재한 선사,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개발추진

- 4.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위한 개발권역·성장연계축의 발전방향(변경 없음)
- 시·군 간 협력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권역별 거점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 체지역을 4개의 개발권역으로 구분하고, 4개의 성장연계축을 구축
  - ① 내륙중심권 + 문화·신산업발전축 전략1 연계
- 자연경관을 이용해 수도권 문화·여가서비스 거점으로 육성,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문화콘켄츠를 관광산업과 융·복합
- 인적자원(혁신·기업도시) 및 산업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거점 육성 및 연관산업 집적 유도
  - 첨단청정산업(철원)~문화산업(춘천)~의료산업(원주) 연계 발전
  - ② 환동해안권 + 북방경제·해양관광축 전략2 연계
  - 설악(산악)~동해안(해안·해양)을 연계한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 중심지역으로 스포츠를 접목한 레저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부품소재 및 해양산업거점 으로서 위상 구축
  - 국제관광(속초), 해양산업(강릉, 동해), 에너지산업(삼척) 연계 개발
  - 금강 연계, 에너지 개발 등 북방루트 개척으로 환동해 경제협력의 교두보
  - ③ 고원남부권 + 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전략3 연계
  - 지형적·기후적 특성을 충분히 이용해 특화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화
  - 에너지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산업(삼척), 국제관광(속초), 해양산업(강릉, 동해) 연계 개발
  -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중부권 대표 관광휴양지로 육성
  - ④ 접경지역권 + 평화·생태육성축 전략4 연계

- DMZ 등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거점으로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에 기반해 다양한 여가콘텐츠 발굴 및 체험관광 활성화
- 신소재(플라즈마) 등 첨단청정산업 육성,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지역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개발

### 5. 재원 조달 계획(변경)

2027년까지 지역개발사업 총 (당초) 88개소에 7조 7,053억 원 투입
 (변경) 89개소에 7조 7,263억 원 투입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수	합계	국비 (국토부)	지방비	민간	
합 계		r) ->	88	7,705,305	479,432.5	744,564.5	6,481,308
		당초			(240,327)		
		변경	89	7,726,282	487,471.5	769,502.5	6,469,308
		변경	89		(226,544)		
		r) ÷	70	6 676 002	275,923.5	502,594.5	5,897,575
	소 계	당초		6,676,093	(102,535)		
	소 계	버거	7.1	C 712 COE	300,745.5	527,284.5	5,885,575
발전 기존		변경	71	6,713,605	(105,535)		
	rlə	22	F 400 4F4	134,823.5	237,393.5	5,111,237.0	
	당초	33	5,483,454	(-)			
촉진형	사업	rrj 2-j	0.0	5 400 454	134,823.5	007 000 5	5,111,237.0
신규 사업		변경	33	5,483,454	(-)	237,393.5	
		-1.5	36	1,192,639 -	141,100.0	265,201.0	786,338.0
	신규	당초			(102,535.0)		
	사업	사업 변경	0.7	1,230,151	165,922.0	289,891.0	774,338.0
			37		(105,535.0)		
소 계 거점 기존 육성형 사업 신규 사업		r) =	10	1,029,212 -	203,509	241,970	583,733
	, -리	で全	당초 18		(137,792)		
	소 세	버거	변경 18	1,012,677 -	186,726	242,218	583,733
		변경			(121,009)		
	r) >	· 12	767,298	125,277.0	151,592.0	490,429.0	
	당소			(102,477.0)			
	변경	10	7.67 000	125,277.0	151 500 0	400,400,0	
		변경	12	767,298	(102,477.0)	151,592.0	490,429.0
		당초 신규	6	261,914	78,232.0	90,378.0	93,304.0
	신규				(35,315.0)		
	사업	버거	변경 6	245,379 -	61,449.0	90,626.0	93,304.0
		변경			(18,532.0)		

※ 동 계획의 국비지원 규모 및 사업규모 등은 향후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각 소관부처 및 재정당국과 별도협의가 필요

-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변경 없음)
  - 국내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 및 기업유치 역량 강화
    -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 및 기업유치 역량 강화
    -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현장설명회 개최
    - 이전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네트워크 확대
  - 신규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홍보, 외자유치 세일즈 활동
  - ㅇ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유치
  - 관광시설 유치 다변화 및 민자유치를 통한 올림픽 지원시설의 조성 유도

# 7.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변경)

	추진					,	사업비(백만원)	1	
지역별	수선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국	刖	지방비	민 간
					0.1 H	국토부	국토부외	. 10.1	
	합계	당초	70건		6,676,093.0	102,535.0	173,388.5	502,594.5	5,897,575
	ㅂ기	변경	71건		6,713,605.0	105,535.0	195,210.5	527,284.5	5,885,575
13개 시·군 (기존 개촉지구	기존	당초	33건		5,483,454.0	-	134,823.5	237,393.5	5,111,237
사업 포함)	710	변경	33건		5,483,454.0	_	134,823.5	237,393.5	5,111,237
	신규	당초	37건		1,192,639.0	102,535.0	38,565.0	265,201.0	786,338.
	건비	변경	38건		1,230,151.0	105,535.0	60,387.0	289,891.0	774,338.
성장촉진	<b>ક્રો</b> -ગો	당초	44건		2,395,939.0	102,535.0	32,999.5	354,050.5	1,906,354
지역	합계	변경	45건		2,433,451.0	105,535.0	42,321.5	379,240.5	1,906,354
	소계		12건		878,305.0	16,000.0	19,165.0	122,011.0	721,129.
			8건	소 계	750,185.0	-	8,000.0	43,000.0	699,185.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A=4,789,424 m²	596,380.0	-	8,000.0	43,000.0	545,380.
		3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A=250,432m²	23,500.0	-	-	_	23,500.0
		모터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사업	A=247,132m²	13,000.0	-	-	_	13,000.
	기존 사업	る	소년 수련단지 조성사업	A=173,600m²	19,165.0	-	-	_	19,165.0
	1 11		용연관광지 조성사업	A=71,012m²	50,000.0	-	-	_	50,000.0
태백시			금천휴양지 조성사업	A=180,880m²	3,042.0	-	-	_	3,042.0
" ' '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	A=290,000m²	4,978.0	-	-	-	4,978.0
		E	H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	A=33,440m²	40,120.0	_	-	_	40,120.
			4건	소 계	128,120.0	16,000.0	11,165.0	79,011.0	21,944.0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A=429,105m²	86,944.0	_	-	65,000.0	21,944.0
	신규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A=61,652m²	12,218.0	-	4,686.0	7,532.0	-
	사업	슬	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	A=72,417m²	12,958.0	_	6,479.0	6,479.0	_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도로개설 1.7km(B=10m) 교량2개소 및 제방정비 1km	16,000.0	16,000.0	_	_	_
	소계	당초	7건		309,273.0	11,749.0	13,834.5	110,350.5	173,339.
	오세	변경	7건		317,073.0	11,749.0	13,834.5	118,150.5	173,339
			2건	소 계	275,823.0	-	13,834.5	88,649.5	173,339
	기존	2	스위치백리조트 조성사업	A=707,186m²	73,969.0	-	3,834.5	3,834.5	66,300.0
	사업	삼척 이	네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A=1,720,426m²	201,854.0	-	10,000.0	84,815.0	107,039
		당초	5건	) _11	33,450.0	11,749.0	-	21,701.0	_
	신규 지어	변경	5건	소 계	41,250.0	11,749.0	_	29,501.0	_
	사업		가곡온천 개발사업	A=16,926m²	4,400.0	_	_	4,400.0	_

	추진						사업비(백만원)		
지역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국 국도부	비 국토부외	지방비	민경
		이사부	·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	A=13,786m²	1,100.0	-	-	1,100.0	_
		당초		도로개설 0.88km(B=8.5~25m)	15,000.0	4,800.0	_	10,200.0	_
		변경	갈천 <sup>~</sup> 증산간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 0.88km(B=8.5~25m)	22,800.0	4,800.0	-	18,000.0	_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 조성사업	L=0.38km, B=6~10m 주차장 A=3,282㎡	1,070.0	750.0	_	320.0	_
		실시아	부 독도 평화의 다리조성사업	보도교 190m(B=5.2m), 데크로드 74m	11,880.0	6,199.0	-	5,681.0	
	소계		6건		177,500.0	12,293.0	-	5,207.0	160,00
			6건	소 계	177,500.0	12,293.0	-	5,207.0	160,00
		농업	관광 융·복합 귀농휴양단지 조성사업	A=465,600m²	80,000.0	-	_	-	80,00
		대명	· 변비발디 체험마을 조성사업	A=85,595m²	12,000.0	-	-	_	12,00
홍천군	 신규	홍친	헌 승마 Complex 조성사업	A=392,171 m²	68,000.0	-	-	_	68,00
	사업	용소	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	도로개설 2.5km(B=8m)(교량 2개소 22.2m, 생태통로 1개소)	12,030.0	9,113.0	-	2,917.0	_
		농업:	관광 융·복합 귀농휴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0.398km(B=15m)	3,370.0	2,360.0	-	1,010.0	_
		대명	비발디 체험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로개설 0.65km(B=10m)	2,100.0	820.0	-	1,280.0	
	소계		3건		13,884.0	11,638.0	-	2,246.0	-
			3건	소계	13,884.0	11,638.0	-	2,246.0	-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A=48,829m²	8,037.0	6,674.0	-	1,363.0	_
횡성군	신규 사업	횡선	성 남산지구 정주환경 개선 기반조성사업	편측인도 개설 1.3km,(B=1.5m)	1,094.0	688.0	_	406.0	_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L=0.6km, B=15.5m 보도설치 L=0.76km, B=2m	4,753.0	4,276.0	_	477.0	_
		당초	8건		735,266.0	12,158.0	-	62,372.0	660,73
	소계	변경	9건		764,978.0	15,158.0	9,322.0	79,762.0	660,73
			3건	소계	450,240.0	-	-	_	450,24
어이그	カス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A=783,851 m²	167,740.0	-	-	-	167,74
영월군	기존 사업	하여	기원 상동테마(교육·힐링) 파크 조성사업	A=202,812m²	52,500.0	-	_	_	52,50
		O:	<sup>1</sup> 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A=574,000m²	230,000.0	-	-	-	230,0
	신규	당초	5건		285,026.0	12,158.0	_	62,372.0	210,49
	사업	변경	6건	소계	314,738.0	15,158.0	9,322.0	79,762.0	210,49

	2 7					,	사업비(백만원)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국	月	ગોમીમો	민간
	006				중사립미	국토부	국토부외	- 지방비	인 간
			한옥마을 조성사업	A=245,712m²	138,496.0	_	-	_	138,496
			상동광산 개발사업	A=294,634m²	72,000.0	-	-	_	72,000.
		늉	부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	A=365,429m²	43,172.0	-	-	43,172.0	-
		한	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개설 1.32km(B=8.0m) 교량 360m	27,200.0	10,000.0	_	17,200.0	_
		동강어리	라연 생태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L=23.2km, B=1.5m 등	4,158.0	2,158.0	-	2,000.0	-
		당초	-	-	-	-	-	_	-
		변경	동강 영월 더 웰타운 조성사업	활력타운 조성 25,091㎡	29,712.0	3,000.0	9,322.0	17,390.0	-
	소계		3건		66,933.0	10,019.0	-	3,414.0	53,500.
	기존		1건	소 계	53,500.0	-	-	_	53,500.
	사업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	A=293,615m²	53,500.0	-	-	-	53,500.
			2건	소계	13,433.0	10,019.0	-	3,414.0	_
평창군	신규	삼방식	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도로확포장 2.21km(B=7~8m), 도로보수 0.56km	7,686.0	7,636.0	-	50.0	-
	사업	평창	아트밸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진입교량(L=0.45km, B=14m), 국도접속구간(L=0.866km, B=12m)	5,747.0	2,383.0	-	3,364.0	_
	소계		4건		199,100.0	15,000.0	_	46,450.0	137,650
			4건	소 계	199,100.0	15,000.0	-	46,450.0	137,650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	A=89,077 m²	140,000.0	-	-	2,350.0	137,650
정선군	신규 사업	아리링	· 클러스터기반시설 조성사업	교량(L=475m,B=14.8m), 접속도로(L=207.36m,B=14m), 상부광장(L=90m,B=33m,A=2, 418㎡)	49,500.0	10,200.0	-	39,300.0	-
		군도7호	호선(사북소2-54호) 접속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344m(B=8.5m)	4,800.0	2,400.0	-	2,400.0	-
		군도3호	호선(정선병원~용탄) 정비사업	도로 확폭 및 기하구조 개선(L=1.6km,B=8m)	4,800.0	2,400.0	-	2,400.0	-
	소계		1건		15,678.0	13,678.0	-	2,000.0	-
양양군	신규		1건	소 계	15,678.0	13,678.0	-	2,000.0	-
	사업	ŕ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	도로개설 3.89km,(B=20m)	15,678.0	13,678.0	-	2,000.0	_
7)-J-J-J-J	ני ניב	당초	16건		1,285,549.0	_	137,989.0	146,044.0	1,001,51
접경지역	합계	변경	16건		1,285,549.0	_	150,489.0	145,544.0	989,516
	소계		4건		571,508.0	_	26,900.0	12,600.0	532,008
춘천시	기존		1건	소 계	387,200.0	-	25,400.0	10,800.0	351,000
	사업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A=815,687 m²	387,200.0	_	25,400.0	10,800.0	351,000

	2 7						사업비(백만원)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국	月	- 지방비	민 간
	005				5사업미	국도부	국토부외	기 시방미	[ 변 신
			조성사업						
			3건	소계	184,308.0	-	1,500.0	1,800.0	181,00
	신규 사업	À.	<del>,</del> 남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A=55,592m², L=3.62km, B=10m	55,300.0	_	_	300.0	55,000
		수	ł천동 관광호텔 건립사업	A=50,000m²	101,008.0	-	_	_	101,00
			의암호 관광유람선 사업	A=4,566m²	28,000.0	-	1,500.0	1,500.0	25,000
	소계		9건		459,413.0	-	97,089.0	116,944.0	245,38
			7건	소 계	378,013.0	-	85,189.0	87,444.0	205,38
			직탕리조트 조성사업	A=95,550m²	130,317.0	-	10,200.0	24,220.0	95,897
		DN	MZ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A=2,009,548 m²	121,000.0	-	21,000.0	20,000.0	80,000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A=319,394m²	65,261.0	-	28,827.0	36,434.0	_
	기존 사업	한탄기	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인도교 0.18km(B=3m), 진입도로 0.5km(,B=5m)	6,800.0	_	5,200.0	1,600.0	-
철원군		포친	년(산정호수) 철원 연결도로 확·포장	L=5.9km, B=12m	13,452.0	_	10,762.0	2,690.0	_
		철원	l 스파리조트 조성 확장사업	A=285,889m²	29,683.0	-	_	200.0	29,483
		DMZ	생태관광거점 순환로 확·포장	L=4.7km, B=8~12m	11,500.0	-	9,200.0	2,300.0	_
			2건	소 계	81,400.0	-	11,900.0	29,500.0	40,000
	신규 사업	Ĭ.	2석정 힐링파크 개발사업	A=239,068 m²	59,600.0	_	11,000.0	28,600.0	20,000
	718	명성	산 궁예길 관광자원 개발사업	A=40,000m²	21,800.0	_	900.0	900.0	20,000
	소계		1건		10,000.0	_	8,000.0	2,000.0	-
화천군	,17		1건	소 계	10,000.0	-	8,000.0	2,000.0	_
	신규 사업	화천	l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	건축물 A=1,400㎡, 휴게공원 A=1,000㎡	10,000.0	-	8,000.0	2,000.0	-
	소계	당초	1건		50,740.0	-	6,000.0	9,500.0	35,240
	12/1	변경	1건		50,740.0	-	18,500.0	9,000.0	23,240
인제군		당초	1건	소 계	50,740.0	-	6,000.0	9,500.0	35,240
신세판	신규	변경	1건	[	50,740.0	-	18,500.0	9,000.0	23,240
	사업	당초	기여하건당이 이게비 나다	활력타운 조성 29,640㎡	50,740.0		6,000.0	9,500.0	35,240
		변경	지역활력타운 인제부 : 터	활력타운 조성 29,831㎡	50,740.0		18,500.0	9,000.0	23,240
	소계 1건			193,888.0	-	_	5,000.0	188,88	
고성군	カス		1건	소 계	193,888.0	-	-	5,000.0	188,88
01-	기존 사업		흥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방·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A=181,906m²	193,888.0	-	_	5,000.0	188,88

						사업비(백만원)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국	. 用	- 지방비	민 간
	002			3시합미	국토부	국토부외	1 시청비	인 선
기존 개촉지구	합계	10건		2,994,605.0	-	2,400.0	2,500.0	2,989,705.
	소계	3건		318,721.0	-	2,400.0	2,500.0	313,821.0
		3건	소 계	318,721.0	-	2,400.0	2,500.0	313,821.0
강릉시	기존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A=112,064m²	152,541.0	-	-	-	152,541.0
	사업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	A=108,596m²	47,117.0	-	_	-	47,117.0
		등명관광지 개발사업	A=193,660m²	119,063.0	-	2,400.0	2,500.0	114,163.0
	소계	7건		2,675,884.0	-	-	_	2,675,884
		7건	소계	2,675,884.0	-	_	-	2,675,884
		도사곡 주거환경개선 사업	A=56,500m²	10,865.0	-	_	-	10,865.0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A=6,965,556.3m²	2,292,006.0	-	_	-	2,292,006
정선군	カス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A=1,872m²	68,479.0	-	_	-	68,479.0
0 44	기존 사업	백운밸리 조성사업	A=96,455m²	58,000.0	-	_	-	58,000.0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A=55,006m²	43,679.0	-	_	_	43,679.0
		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A=83,179m²	82,855.0	-	-	-	82,855.0
		새골 위락단지 조성사업	A=789,226m²	120,000.0	-		_	120,000.

# ○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변경)

	추진						사업비(백만원)	T	I
지역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도부	국토부외	- 지방비	민간
		당초	18건		1,029,212.0	137,792.0	65,717.0	241,970.0	583,733.
8개시·군	합계	변경	18건		1,012,677.0	121,009.0	65,717.0	242,218.0	583,733
(기존	-)-7	당초	12건		767,298.0	102,477.0	22,800.0	151,592.0	490,429
특정지역	기존	변경	12건		767,298.0	102,477.0	22,800.0	151,592.0	490,429
사업 포함)	신규	당초	6건		261,914.0	35,315.0	42,917.0	90,378.0	93,304.
	刊用	변경	6건		245,379.0	18,532.0	42,917.0	90,626.0	93,304.
거점	합계	당초	13건		937,012.0	99,335.0	44,217.0	212,027.0	581,433
육성지역	H/II	변경	13건		920,477.0	82,552.0	44,217.0	212,275.0	581,433
	소계		1건		340,448.0	_	_	34,045.0	306,403
원주시	기존		1건	소 계	340,448.0	_	_	34,045.0	306,403
	사업	남원주역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A=468,787 m²	340,448.0	_	_	34,045.0	306,403
	소계		3건		71,400.0	37,100.0	-	34,300.0	-
			2건	소계	46,900.0	20,000.0	_	26,900.0	-
강릉시	기존 사업		교온천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연결로 개설	도로개설 2.24km,(B=13m), 연결로 개설 0.44km(B=7.6m)	25,500.0	20,000.0	-	5,500.0	
001		단오문	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	L=1.8km, B=20m	21,400.0	-	_	21,400.0	-
	신규		1건	소 계	24,500.0	17,100.0	_	7,400.0	_
	사업	올	님픽파크 탐방로 조성사업	A=200,000m²	24,500.0	17,100.0	-	7,400.0	-
	2 -11	당초	3건		221,231.0	14,800.0	42,917.0	81,514.0	82,000.
	소계	변경	3건		204,696.0	1,432.0	42,917.0	78,347.0	82,000.
		당초	3건		221,231.0	14,800.0	42,917.0	81,514.0	82,000.
		변경	3건	소 계	204,696.0	1,432.0	42,917.0	78,347.0	82,000.
				건강생명휴양지구 : A=285,093㎡, 복합체험관광지구 : A=934,890㎡	· · · · · · · · · · · · · · · · · · ·	-	27,101.0	45,958.0	72,470.
동해시		묵호 등	두대마을 감성관광지 조성사업	A=484,415m²	40,182.0	_	15,316.0	15,336.0	9,530.0
	신규 사업	당초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강생명 휴양지구 도로확장(L=2.8km, B=8~20m) 복합체험 관광지구도로신설(L=1.4km, B=10~13.5m)	35,520.0	14,800.0	500.0	20,220.0	-
		변경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sup>1</sup>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강생명 휴양지구 도로확장(L=2.5km, B=8~20m) 복합체험 관광지구도로신설(L=1.4km, B=10~13.5m)	18,985.0	1,432.0	500.0	17,053.0	-
	소계		4건		287,750.0	44,020.0	1,300.0	60,704.0	181,726
속초시	기존		4건	소계	287,750.0	44,020.0	1,300.0	60,704.0	181,726
	사업	설	악동 재개발사업(지자체)	A=114,688m²	79,442.0	24,972.0	1,300.0	53,170.0	_

	- <del>7</del> -7					,	사업비(백만원)		
지역별	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	지방비	민간
					0 1 1 1	국토부	국토부외	101	
		설	얼악동 재개발사업(민간)	A=276,007 m²	181,726.0	-	_	_	181,726.0
		속초관광	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L=1.64km, B=9~15m	17,518.0	10,911.0	-	6,607.0	-
		설악	산 연계 관광도로 개설사업	L=1.84km, B=20m	9,064.0	8,137.0	_	927.0	-
	, 크l	당초	2건		16,183.0	3,415.0	-	1,464.0	11,304.0
	소계	변경	2건		16,183.0	-	-	4,879.0	11,304.0
		당초	2건	2 जी	16,183.0	3,415.0	-	1,464.0	11,304.0
ᅯᆡᄀ		변경	2건	소 계	16,183.0	-	-	4,879.0	11,304.0
정선군	신규	;	참숯힐링랜드 조성사업	A=53,000m²	11,304.0	-	-	-	11,304.0
	사업	당초	삼탄아트밸리 기반시설사업	연결도로 1.5km(B=10m) 공원시설(A=3,300㎡)	4,879.0	3,415.0	-	1,464.0	_
		변경	삼탄아트밸리 기반시설사업	연결도로 1.5km(B=10m) 공원시설(A=3,300㎡)	4,879.0	_	_	4,879.0	-
기존 특정지역	합계		5건		92,200.0	38,457.0	21,500.0	29,943.0	2,300.0
	소계		1건		9,000.0	7,900.0	-	1,100.0	_
인제군	기존		1건	소 계	9,000.0	7,900.0	-	1,100.0	-
	사업	모험레포	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	L=2.22km, B=10~18.5m	9,000.0	7,900.0	-	1,100.0	_
	소계		3건		62,000.0	19,980.0	21,500.0	18,220.0	2,300.0
			3건	소 계	62,000.0	19,980.0	21,500.0	18,220.0	2,300.0
고성군	,_		건봉사 복원사업	242,368 m²	15,800.0	-	9,500.0	4,000.0	2,300.0
Tr. 9.4	기존 사업		문암진리 선사유적 공원화사업	67,634 m²	24,000.0	-	12,000.0	12,000.0	-
		관동별	결곡 800리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L=4.02km, B=8m	22,200.0	19,980.0	_	2,220.0	-
	소계		1건		21,200.0	10,577.0	-	10,623.0	-
양양군	기존		1건	소 계	21,200.0	10,577.0	-	10,623.0	-
0 0 0	기관 사업	남대천 -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1구간 L=0.37km, B=20m, 2구간 L=3.72km, B=10m	21,200.0	10,577.0	-	10,623.0	-

- 8. 변경사유 : 현지 여건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등 19개 사업
- 현지 여건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14개 사업)
  - (강릉시)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

(태백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단지 조성사업,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 (삼척시) 스위치백리조트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홍천군) 대명비발디 체험마을 조성사업, 대명비발디 체험마을 집입도로 조성사업, 홍천 승마 Complex 조성사업, 농업관광 융·복합 귀농휴양단지 조성사업 (평창군)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정선군) 군도3호선(정선병원~용탄) 정비사업

(양양군)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

- 현지 여건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및 재원 조정(1개 사업)
  - (정선군) 삼탄아트밸리 기반시설사업
-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반영 등 현실화(1개 사업)
  - (삼척시) 갈천~증산간 도로개설사업
- '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반영(1개 사업)
  - (영월군) 동강 영월 더 웰타운 조성사업
- 현지 여건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1개 사업)
  -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현지 여건에 따른 사업 면적 조정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재원 변경(1개 사업)
  - (인제군)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 9. 관계 서류 및 도면 등 : 실음생략
- 공람기간 : 2025. 2. . ~ 2025. 2.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033-249-3032), 강릉시 기획예산과(☎ 033-640-5455), 동해시 기획예산담당관(☎ 033-539-8126), 태백시 국가정책추진실(☎ 033-550-3800), 삼척시 기획조정실(☎ 033-570-3715), 홍천군 기획감사실(☎ 033-430-2014), 영월군 기획감사실(☎ 033-370-2054), 평창 군 기획예산과(☎ 033-330-2225), 정선군 기획관(☎ 033-560-2246),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033-460-4002), 양양군 기획감사실(☎ 033-670-2211)에서 열람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8호

##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명: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유산동, 운산동, 구정면 덕현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50.3ha

5. 사 업 량

O 배수문: 6개소 신설(자동문비 D600, D800, D1000, 1.5x1.5)

○ 용배수로 정비: 9조 2.980km○ 복토: 40,883㎡ (9.53ha)○ 부대공사: 가설공사 등

6. 사업비 : 6,02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5.02. ~ 2028.12.

8.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봉화길 64,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48-9706)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ŀ
구 분	필 지	면적 공부면적	(m²) 편입면적	:									
계	5	5,454.0	71.0	8	10,059.0	646.0	23		9,065.0	36	47,621.0	9,782.0	
답	1	433	12	3	4,813	315				4	5,246	327	
전	1	1,889	12	1	2,627	90				2	4,516	102	
구거	2	3,033	22				9	18,527	6,319	11	21,560	6,341	
도로	1	99	25	2	1,705	233	12	7,730	2,717	15	9,534	2,975	
임야										0	0	0	
대지										0	0	0	
유지										0	0	0	
제방				1	883	3	1	1,805	11	2	2,688	14	
하천				1	31	5	1	4,046	18	2	4,077	23	
철										0	0	0	
잡종지										0	0	0	

일		지번		면	적	5	트지소유자 -		관계인		
련 번 호	소재지	시민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²)	편입 면적(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강릉시 유산동	253-3	도	585	3	국(건설교 통부)					
2	강릉시 유산동	236-8	도	139	27	국(농림축 산식품부)					
3	강릉시 유산동	228-12	구	1,320	286	국(농림축 산식품부)					
4	강릉시 유산동	228-14	도	384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5	강릉시 유산동	228-6	구	645	140	국(농림축 산식품부)					
6	강릉시 유산동	228-7	제	1,805	11	국(농림축 산식품부)					
7	강릉시 유산동	259-4	제	883	3	강릉시					
8	강릉시 박월동	14-11	도	1,716	326	국(농림축 산식품부)					
9	강릉시 박월동	23-1	전	1,889	12	최순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항골길 65, 106동 1603호(천곡동, 금호어울림 라포레)				
10	강릉시 박월동	21-6	구	1,835	878	국(농림축 산식품부)					

				면	적	臣	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1	강릉시 박월동	38	도	1,636	244	국(농림축산 식품부)					
12	강릉시 박월동	17-9	도	1,845	1,357	국(농림축산 식품부)					
13	강릉시 박월동	26-7	도	45	26	국(농림축산 식품부)					
14	강릉시 박월동	26-6	구	7,595	2,674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강릉시 박월동	28-11	도	303	229	국(농림축산 식품부)					
16	강릉시 박월동	29-11	도	317	239	국(농림축산 식품부)					
17	강릉시 박월동	30-12	도	281	214	국(농림축산 식품부)					
18	강릉시 박월동	315-2	구	1,915	1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강릉시 박월동	61-2	구	1,118	1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강릉시 박월동	33-7	답	2,579	140	강릉시					
21	강릉시 박월동	33-9	답	433	12	권순억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2, 113동 2202호(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 트아파트)				

일				면	적	토	지소유자		관계인		
편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2	강릉시 박월동	32-8	구	856	12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강릉시 박월동	32-20	답	39	17	강릉시					
24	강릉시 박월동	32-19	답	2,195	158	강릉시					
25	강릉시 박월동	32-10	도	1,587	213	강릉시					
26	강릉시 박월동	32-18	전	2,627	90	강릉시					
27	강릉시 박월동	661-1	도	102	17	국(국토교 통부)					
28	강릉시 박월동	59	도	99	25	미등기					
29	강릉시 박월동	56-4	도	118	20	강릉시					
30	강릉시 박월동	56-3	천	31	5	강릉시					
31	강릉시 박월동	660	천	4,046	18	국(환경부)					
32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440-1	구	797	337	국(농림축 산식품부)					

				면	적	토지소	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3	강릉시 운산동	740-8	구	2,002	102	국(농림축산 식품부)					
34	강릉시 운산동	740-10	구	3,065	1,790	국(농림축산 식품부)					
35	강릉시 운산동	740-23	구	412	100	국(국토교통 부)					
36	강릉시 운산동	740-29	구	377	11	국(국토교통 부)					
					0]	하	여	백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9호

##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0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양지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57.5ha

5. 사업량

O 배수로 확장·정비 : 8조 4.2km

O 매립: 16,469m³(1.94ha)

O 부대공사: 폐기물 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6. 사업비: 5,808백만원

7. 사업기간: 2025. 02. ~ 2028.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74번길 21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3-450-1375)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의 집	계표 (총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חן ח
구 분	필	면적	(m²)	필	면적	(m²)	필	면적	(m²)	필	면적	(m²)	비고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2,144.0	1,784.4	7	2,938.0	575.7	26	113,305. 3	27,739.2	38	118,387. 3	30,099.3	
천	_	-	_	_	-	_	13	28,466.0	5,784.5	13	28,466	5,784.5	
도로	_	-	_	5	1,390.0	209.9	4	25,584.3	197.4	9	26,974.3	407.3	
구거	_	-	_	_	-	_	8	45,678.0	21,520.5	8	45,678.0	21,520.5	
답	5	2,144.0	1,784.4	1	391.0	95.1	_	_	_	6	2,535.0	1,879.5	
전	-	_	_	_	_	_	1	13,577.0	236.8	1	13,577.0	236.8	
임야	_	_	_	1	1,157.0	270.7	_	_	_	1	1,157.0	270.7	

				면	적	토	지소유자		관계인		
일 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동송읍 양지리	1233-1	하 천	7,058. 0	1,929. 1	국 (농림부)					
2	동송읍 하갈리	929-1	하 천	2,365. 0	1,799. 3	국 (농림부)					
3	동송읍 하갈리	932-0	답	15.0	15.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4	동송읍 하갈리	931-0	답	1,056. 0	1,056. 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5	동송읍 하갈리	929-3	답	551.0	551.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6	동송읍 하갈리	919-0	임야	1,157. 0	270.7	철원군					
7	동송읍 하갈리	927-3	하 천	2,251. 0	293.9	국 (농림부)					
8	동송읍 양지리	1238-1	하 천	3,978. 0	438.7	국 (농림부)					
9	동송읍 하갈리	921-2	답	391.0	95.1	철원군					
10	동송읍 양지리	1258-1	하 천	586.0	0.02	철원군					

				면	적	토	지소유자		관계인		
일 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1	동송읍 하갈리	927-6	하 천	265.0	210.8	국 (농림부)					
12	동송읍 하갈리	927-7	하 천	158.0	116.9	국 (농림부)					
13	동송읍 하갈리	928-0	도 로	281.0	17.3	철원군					
14	동송읍 하갈리	2023-0	구 거	22,796 .0	15,356 .5	국 (농림부)					
15	동송읍 하갈리	927-1	하 천	47.0	6.4	국 (농림부)					
16	동송읍 하갈리	2022-0	도로	8,740. 3	73.4	국 (농림부)					
17	동송읍 양지리	1258-4	하 천	208.0	11.2	국 (농림부)					
18	동송읍 대위리	179-1	하 천	9,568. 0	79.7	국 (농림부)					
19	동송읍 하갈리	929-6	하 천	1,027. 0	612.4	국 (농림부)					
20	동송읍 하갈리	937	답	315.0	127.5	김순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면	적	Ē	지소유자		관계인		
일 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1	동송읍 양지리	1231-5	전	13,577 .0	236.8	국 (국방부)					
22	동송읍 하갈리	929-5	하 천	714.0	254.3	국 (농림부)	-				
23	동송읍 양지리	1263-1	하 천	241.0	31.7	국 (농림부)					
24	동송읍 하갈리	791	구 거	3,434. 0	137.2	국 (농림부)					
25	동송읍 양지리	1242	답	207.0	34.9	임성훈	이평리 558-2				
26	동송읍 양지리	3092	구 거	7,820. 0	2,730. 1	국 (농수산부)					
27	동송읍 양지리	3084	구 거	5,402. 0	874.9	국 (농수산부)					
28	동송읍 양지리	3081	도 로	4,363. 0	3.4	국 (농수산부)					
29	동송읍 양지리	3073	도 로	8,973. 0	117.7	국 (농수산부)					
30	동송읍 양지리	3087	도로	3,508. 0	3.0	국 (농수산부)					

				면	적	토지소	·유자		관계인		
일 런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1	동송읍 양지리	3086	구거	2,614.0	1,036.8	국 (농수산부)					
32	동송읍 양지리	3088	구거	1,640.0	418.5	국 (농수산부)					
33	동송읍 양지리	3097	구거	1,134.0	437.8	국 (농수산부)					
34	동송읍 양지리	3098	구거	838.0	528.7	국 (농수산부)					
35	동송읍 양지리	2582-1	도로	167.0	60.4	철원군					
36	동송읍 양지리	2583-1	도로	86.0	69.7	철원군					
37	동송읍 양지리	2584-1	도로	63.0	20.2	철원군					
38	동송읍 양지리	1237-6	도로	793.0	42.4	철원군					
					0]	하	여	백			

# 공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80호

####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쾌적한 환경조 성과 강원환경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자를 발굴하여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2025년 2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시 상 부 문: 대상 및 4개 부문상
- ①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② 환경보호운동 ③ 환경보전 생활실천 ④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 2. 추 천 대 상: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체, 마을, 학교, 공 공기관, 군부대 등
- 3. 추 천 방 법: 부문별 공로자에 대해 추천권자의 추천, 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서류(공 적조서,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공적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추천권자에게 신청
  - 가. 추천권자: 강원 권역 지자체장, 도단위 기관·단체장, 군단급 이상 부대장
  - 나. 추천서류
    -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
    -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다.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33-249-3511), 시·군 환경부서

전국단위 원활한 공모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외 소재 개인·단체는 도청 환경정책과로 신청

- 4. 추 천 기 간: 2025년 2월 24일 ~ 3월 28일(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5. 수상자 선정: 공적사실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수상자 개별 통지)
- 6. 시 상 내 역: 상패 수여
- 7. 시 상 시 기: 2025년 6월 중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state.gwd.go.kr)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도정마당 공고/고시)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04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상 호 : ㈜씨에스개발

2. 대 표 자 : 김창준

3. 등록일자 : 2025. 2. 24.

4. 등록번호 : 강원250003호

5. 자 본 금: 300,000천원

6. 영 업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95, 4층

#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5-112호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21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 강원대학교 율곡관 승강기 증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면적 : 889,343.70m²

나. 인가면적 : 1,920㎡ 다. 세부용도 : 지원시설

라. 건축규모 : 부지면적 1,920㎡, 건축면적 895.5㎡(금회증축 5.9㎡), 연면적 3,510.0㎡(금회증축 23.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원대학교 총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건축허가일(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4.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	적 (m²)	소 유	자	비고
[ 번오	게시	기반	시도	공부면적	금회 사업면적	성 명	주 소	미끄
	합 계	1필	지	73,697	1,920			
1	효자동	210-1	학	73,697	1,920	국(교육부)		

#### - 세부조성계획 조서

	구 분	부지면	.적(m²)	건축당	면적(m²)	건축연	[면적(m²)	높이(	층수)	비고
	I 元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지원시설	기숙사(율곡관)	1,920	1,920	939.6	895.5 (중축 5.9)	3,686.4	3,510.0 (중축 23.6)	지상4층	지상4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고시 제2025-113호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210-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 강원대학교 퇴계관 승강기 증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면적 : 889,343.70m²

나. 인가면적 : 2,664㎡ 다. 세부용도 : 지원시설

라. 건축규모 : 부지면적 2,664㎡, 건축면적 895.71㎡(금회증축 6.11㎡), 연면적 3,510.84㎡(금회증축 24.4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원대학교 총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4.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	적 (m²)	소 유	자	비고
민오	게시	시킨 	시도	공부면적	금회 사업면적	성 명	주 소	비┸
	합 계	1필	지	73,697	2,664			
1	효자동	210-1	학	73,697	2,664	국(교육부)		

## - 세부조성계획 조서

	구 분	부지면	.적(m²)	건축덕	면적(m²)	건축연	[면적(m²)	높이(-	층수)	비고
	1 L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결정면적	금회사업	
지원시설	기숙사(퇴계관)	2,664	2,664	939.6	895.71 (증축 6.11)	3,686.4	3,510.84 (중축 24.44)	지상4층	지상4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고시 제2025-114호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나. 명칭 : 춘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가. 결정면적 : 14,150m² ※강원도 고시 제2022-44호

나. 인가면적 : 14,147 m²

다. 규 모

- 기정 : 건축물 1개동[자동차관련시설,지하1층,지상2층,건축면적 1,603.53㎡,건축연면적 2,461.05㎡]
- 변경
  - 1) 주1동[자동차관련시설,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465.97㎡, 건축연면적 2,323.49㎡]
  - 2) 주2동[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지상1층, 건축면적 169.58㎡(증 32.02㎡), 건축연면적169.58㎡(증 32.02㎡)]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춘천시장(교통과)

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건축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토지조서

일련	드기	حاليا	-J 🗆	대장면적			소 유 자	소	유권외 권	리	n) –
번호	동리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1	장학리	791-1	전	1,484	1,484	춘천시					
2	장학리	791-4	전	560	560	춘천시					
3	장학리	791-5	차	2,693	2,693	춘천시					
4	장학리	791-22	대	664	664	춘천시					
5	장학리	791-28	전	30	30	춘천시					
6	장학리	791-29	유	41	41	춘천시					
7	장학리	791-189	전	39	39	춘천시					
8	장학리	791-193	유	3	1	춘천시					
9	장학리	791-244	전	77	77	춘천시					
10	장학리	791-245	전	10	10	춘천시					
11	장학리	791-257	전	1,166	1,166	춘천시					
12	장학리	794-1	잡	4,596	4,596	춘천시					
13	장학리	794-15	대	2,099	2,099	춘천시					
14	장학리	926-33	구	894	687	춘천시					
		합계		14,356	14,147						

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강릉시 고시 제2025-67호

# 강릉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소로 2-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1-37호(2021.2.10.)로 최초 결정된 안현동 365-1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 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0일

강 릉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1호선)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1,093	저동498	안현동841-2	일반 도로	_	강릉시 고시 제2021-37호(2 021.2.10.)	_
변경	소로	2	1	8	집산 도로	1,093	저동498	안현동841-2	일반 도로	_	강릉시 고시 제2021-37호(2 021.2.10.)	선형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1호선)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선형변경	실시설계 및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 선형조정

- 3)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 2.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안현동 365-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 2-1호선)사업
    - 2) 명 칭: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足			연 ?	당(m)	실시계획인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총연장 (m)	금회 시행	물자계락한기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도로	소로	2	1	8	집산 도로	1,093	240	2,366	강릉시 고시 제2021-37호 (2021.2.10.)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2) 성 명: 강릉시장(도로과장)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6년 12월 31일

## 바. 자금조달계획: 339,100,000원(금삼억삼천구백일십만원)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지	지번	지목	지	적(m²)	소 유 자		소유	P권이외의=	권리
신오	소재지	기반	시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계			필지	27,259	2,366					
1	안현동	365-1	전	65	65	강릉시	공			
2	안현동	364-1	답	345	345	강릉시	공			
						강릉시 회산로	전○봉			
3	안현동	산44	임	6,645	643	강릉시 하남길	전○숙			
						강릉시 하남길	전○기			
4	안현동	363	답	50	50	강릉시	공			
5	안현동	361-1	전	7	7	강릉시	공			
6	안현동	822	도	11,648	428	건설부	국			
7	안현동	362-1	전	1,171	237	강릉시 창해로	김○권			
8	안현동	353	답	4,855	87	강릉시 하남길	전○기			
9	안현동	356-4	전	132	54	강원도	공			

ul ÷	u · 토지 · Ju		-J) II	지 적(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10	안현동	357-4	답	24	4	강릉시	공			
11	안현동	362	답	682	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화			
12	안현동	356-6	전	234	234	강릉시	공			
13	안현동	362-5	답	1,077	118	안현동	조○원			
14	안현동	356-5	显	15	15	강릉시	공			
15	안현동	362-12	답	309	6	강원도	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하여 조성 후 강릉시에 귀속될 예정 강릉시 공고 제2025-356호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70, 71호(1977.4.19.)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교동 108-8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75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열람을 위한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릉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릉시 교동 108-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5호선) 사업

2) 명 칭: 강릉 도시계획도로(중로2-75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연장(m)		연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총연장	금회시행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도로	중로	2	75	15	보조간 선도로	315	315	대로3-3 포남동 983	중로1-34 교동 108-16대	강원도 고시 제70, 71호 (1977.4.19.)	_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285, 219호(교동,강릉역블루핀)

2) 성 명: 주식회사 베스트앤비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5. 12. 31.

## 바.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126,720,000원

2)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자 100%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 적 (m²)	비고
도로	중로2-75호선	L=315m, B=15m	1,359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V) -1)				면적	(m <sup>2</sup> )	<i>ব</i>	<u>-</u> 유자	소유권	· 이외의 권리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 고
	합	계		6,570	1,359			ı	_	
1	교동	108-8	철	11	11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139	-	_	
2	교동	109-3	대	13	13	국	국토교통부	_	_	
3	교동	112-4	대	7	7	국	국토교통부	_	_	
4	교동	112-6	대	1	1	국	국토교통부	_	_	
5	교동	112-14	대	109	1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I	-	
6	포남동	838-7	잡	26	26	국	기획재정부	-	_	
7	포남동	851-9	철	96	96	국	기획재정부	_	_	
8	포남동	852-17	대	2	2	강릉시	_	_	_	
9	포남동	983	도	6,282.5	1,166	강릉시	_			
10	포남동	1042-4	철	22	22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139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5. 2. 20. ~ 2025. 3. 7.(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시과(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	견	서			
① 건	명	강릉 도/ 열람·공		설(도로	: 중로2	-75호선),	시업 시행	자지정 및 실	실시계획인기
				토 지	소 재 저	:		지적	지목
② 열람의견관	련토지								
③의 견 제 <sup>†</sup>	축 이	성 명			(인)	소유자오	<b>과</b> 의관계		
		주 소					(전호	화번호:	
<b>④</b> 의	견								

#### 강릉시 보건소 공고 제2025-38호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공고

평일야간 및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외래 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 이병원)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5년 2월 26일

강 릉 시 장

#### 1. 지정대상

#### 가. 기본요건

- 강릉시 관내 소아환자 진료의료기관

※ 단,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 건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진료 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참여 가능

-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
- 나. 참여형태
  - 일반운영: 진료의사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에서 주 7일 책임운영
  - 일부요일 운영: 일부요일만 운영(평일 한정 시 주3일 이상 / 토·일요일 포함 주2일 이상)

※ 단, 토·일요일 포함 주2일 운영시 정해진 요일 외에 공휴일도 운영 필수

- 연합운영: 강릉시 관내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7일 운영

※ 참여기관은 인근 약국 중 협력 약국 지정하여 신청

다. 운영시간: 최소운영시간 이상 진료해야 진료요일로 인정하며 모범운영시간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 포함)
최소운영시간	18시~23시	10시~18시
모범운영시간	18시~24시	9시~22시

2. 지정기간: 2025년 5월 ~ 2027년 4월[2년간]

※ 특별한 사유(의료기관 폐업, 의료진 미확보, 부정운영적발 등)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유지

####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25년 2월 26일(수) ~ 2025년 3월 12일(수)[15일간]

나. 접수장소: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3층 질병예방과(내곡동)

다. 접수방법: 평일 09:00~18:00까지 직접 접수(공휴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4. 제출서류: [붙임1] 제출서류 참고
  - 가.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1부
  - 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1부
  - 다.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 서류 1부.
- 5. 지정기준 및 절차
  - 가. 지정기준: 소아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 [붙임2] 선정지표 참고
  - 나. 지정절차

신청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관내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 진행
Ţ	
결정	시·군·구는 심사 결과 및 검토의견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선정 여부 결정
지정서 발급	시·도지사는 선정 결과 안내 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발급

- 6. 지정결과 통보: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통보
- 7. 운영규정: [붙임3] 소아 야간 ·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규정 참고
- 8. 지원사항
  - 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교통비, 회계감사 수수료)
    - 운영비 지원 세부기준(충족시 지원)
    - (1) 전일운영: 주 7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단위: 백만 원)

야간/휴일	41시간 이상	46시간 이상	51시간 이상	56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진료시간	46시간 미만	51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00/145 01/8
활성화지역	240	270	330	420	540

(2) 일부운영: 일부 요일 운영하지만 소아진료 활성화지역에 소재한 경우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단위: 백만 원)

야간/휴일	15시간 이상	21시간 이상	26시간 이상	31시간 이상	36시간 이상
진료시간	21시간 미만	26시간 미만	31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41시간 미만
활성화지역	75	100	125	160	200

### 나. 수가 산정

- 달빛어린이병원: 『소아환자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산정
- $\Rightarrow$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 $18\sim24$ 시, 토·일·공휴일  $0\sim24$ 시의 범위 내 지정한 시간)에 18세 이하 소 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
  - 협력약국: 『소아환자 야간진료조제료』 수가 산정
- ⇒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질병예방과(☎ 033-660-3100)로 문의

### 붙임 1. 제출서류

- 2. 참여기관 선정지표
- 3.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규정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구분	작성항목	비고
I	제 출 문	목차 표기
П	사업계획 요약서	
Ш	사업계획서 본문	
IV	첨부자료	

※주의사항: 연합운영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진'에 대해 작성

## ★ 참여신청 의료기관 제출 서류

- 야간 · 휴일 소아진료 기관 지정신청서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출력물 1부) 및 저장매체(USB 등 1매)
-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서류

# I. 제 출 문

ILT	大	
제	三	T

○○○○ 병·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1부

- 2. ○○○ 병·의원 사업계획서 1부
- 3. 저장매체 1매(인터넷망 파일 전송 시 생략 가능)

20□□. . .

강릉시장 귀하

제 출 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7. 31.>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월
	명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신청인(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신청인	전문과목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Ⅱ. 사업계획 요약서

○○○○ 병·의원						
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지역(시군구) 인구수	명	소0	아인구수	명( %)		
의료기관 종별	예) 병·의원	응급의료기관종류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예) 해당사항 없음		
총 병상수			합계	명		
건축면적		직전 연도	평일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내원 환자수	토요일			
개소일			일 요 일 ( <del>공휴</del> 일포함)			
전경사진-1			전경	<b>불사진-2</b>		

# ○○○○ 병·의원

### 2. 사업개요

	평일	예) 19:00 ~ 24:00
현재 운영 시간	토요일	예) 14:00 ~ 24:00
	일·공휴일	<i>△  )</i> 09:00 ~ 24:00

- ㅇ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작시점 기재
- 이 향후 계획

구분	운영시간	시간	비고
평일	19:00 ~ 24:00	25시간	5시간 × 5일
토요일	14:00 ~ 24:00	10시간	
일요일, 공휴일	09:00 ~ 24:00	15시간	
주간	합계	50시간	

- 이 장비 규모(리스트, 용도, 수령) :
- 이 인력 규모(구분, 인원 수)

운영 계획

그ㅂ		현재	향후	충원시점	
	구분		충원규모	중 전기점	
الا ال	(ㅇㅇ과)전문의				
의사	일반의				
	간호사				
간호 관련	간호조무사				
	보조원(자격증없음)				
관리 사무	사무직				
관련 기타					
합계					

- 야간 공휴일 상주 인력 규모 :
- ㅇ 협력 약국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 병·의원
	o <u>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u>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등 요약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지역의 소아환자 발생 현황,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과 목적 기술
그간의 실적	직전 연도 소아환자 진료실적 및 야간 휴일 진료실적
사업 내용	소아 야간·휴일 진료 비전, 목표(계량화)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인력 확보 및 운영계 획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 사 등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충원시점포함)을 제시

# Ⅲ. 사업계획서 본문

# 1. 사업의 필요성

가. 인구, 지리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 아 야간·공휴일 진료의 필요성

# 2. 병·의원 현황

가. 일반현황

- (1) 병·의원 연혁
- (2) 병·의원 조직체계
- (3) 병상 수(현재 기준으로 작성, 없으면 생략)

총 허가병상수	총 실 운영 병상수	소아 입원 병상수	소아중환자실 병상수

# (4) 인력 현황

÷	구분	전공분야	현인원	주요역할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신군의 	기타( )		
	일반의			
		간호사		
간호 관	반련	간호조무사		
		보조원(자격증 없음)		
관리 사무관련		사무직		
신디 ^ 	「十世년	기타		

# (5) 시설 현황

연번	구분	현황	비고
1	소아 진료구역		
2	입원 병동		
3	처치실 또는 수술실		
4	환자편의시설(수유실/기저귀교환실)		
5	기타(중환자실 등)		

## (6) 장비 현황

연번	구분	현황	비고

(7) <u>협력 약국</u>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8)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직전 연도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합계	평일	토요일	일·공휴일
소아환자				

### 다. 현재 운영시간

(단위: 00시-00시)

구분	평일	토요일	일·공휴일
운영 시간	<i>वी) 09:00-18:00</i>	A) 09:00-21:00	<i>4)</i> 09:00-21:00

### 3. 향후 사업 운영 계획

가. 운영 계획

(1) 지정 후 소아환자 진료 계획 및 인력 운영 계획

(단위: 00시-00시)

구분	평일	토요일	일·공휴일
운영 시간	19:00-24:00	14:00-24:00	09:00-24:00

○ 소아 야간·휴일 진료팀 구성 및 진료, 당직체계

-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비고

- 진료팀 구성 및 진료
- 당직체계
- 소아 야간·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Ξ	구분	전공분야	현인원	필요인원	확충 계획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군의	기타( )			
	일반의				
		간호사			
간호 관	<u></u> 관련	간호조무사			
		보조원(자격증 없음)			
관리 사무관련		사무직			
건니 /	竹十世년	기타			

- 인력 충원 계획
- 인력 충원 및 확보 계획 (충원시점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 결원 발생시 비상운영계획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 진료 협력 병원 등과의 구체적인 협진 체계, 지역 응급 연락망 등

# 4. 의료기관의 의지

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행정지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 획	진료지원	
	인력확보	

## 나. 의료기관장의 추진 결의서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본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병·의원명)의 장으로서 본원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와 소관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으며 사업 실무자의 정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 다.

		_ ,	,	· ·			
							Ò
							을
시히	· 생하겠습	러다					

20□□년 00월 00일

oooo병·의원장 o o o (서명<u>) (본인서명필수</u>)

I۷	첨부자료
IV.	섬부사됴

※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도움이 되는 도면 및 서류 일체

# 붙임2

# 참여기관 산정지표

항목	주요내용	배점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소청과전문의 수/전체 참여의사 수) x 15 - 단, 비소청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의 경우 최근 1년 간 지속적인 소아환자 진료경험이 확인되어야 참여가능	15점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50점)	○ 참여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 18세 이하)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	20점
(30 日)	○ 기존 야간·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	15점
	○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인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종합병원과 소아환자 연계·협력 체계 구축 여부	가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 <u>주당 운영시간)</u> ○ 인력투입의 실현가능성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결원발생시 비상운영계획 등	10점
(40점)	○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20점
	○ 사업효과성 및 지역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평가	10점
기타 (10점)	○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사업수행 의지 ○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10점
총점		100점

※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역 내 단독 신청이라 할지라도 지정불가

# 붙임3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규정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규정 >

- ①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요일 및 시간에 소아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 단,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최소 2주일 전에 지자체 (시·구·구 및 시·도)에 알려야 한다.
- ②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으로, 운영시간 내 방문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단, 당일 외래환자 접수대기 인원이 운영시간 내에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당 일 외래 진료 접수 마감을 안내할 수 있다.)
- ③ 지정된 진료요일, 진료시간 및 주요 진료 인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6주 전에 요청해야 한다.
  - 참여기관은 이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병 · 의원 또는 협력약국의 양도 · 양수로 인한 인력변경 등
- ④ 최소 진료요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정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6주 전에 지자체에 운영 일시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 참여기관은 이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부정 운영(적정 인력(조제)인력 미달, 야간진료(조제)관리료무단청구 등) 및 무단 휴진(운영 시간 미준수 등)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 지정취소된 의료기관은 직후 공모에 참여 불가
- ⑤ 시·도가 연휴기간(설, 추석 등) 야간·휴일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휴진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 ⑥ 응급실을 보유한 기관은 응급실과 별도로 외래 진료실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달빛어린 이병원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고, 원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다.
- ⑦ 해당 지자체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불시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동해시 고시 제2025-27호

### 동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5)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50호(1995.6.28.)로 최초 결정된 동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5)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동 해 시 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동해시 구호동 231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5)사업 나. 명 칭 : 동해발전본부 공해방지설비(탈황설비)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시설결정(부지)면적 : A = 141.131.9m²(115,527.4m²)

л н	7) ul	지목		편입면적(m²)				
구 분	지 번		결정면적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1	구호동 231	장	115,527.4	115,527.4	_	_		
2	구호동 230	장	25,604.5	_	_	기조성완료		
	합 계		141,131.9	115,527.4	_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권명호나. 주 소: 동해시 공단9로 145, 1층(구호동)

5. 사업의 착수 · 준공 예정일

가. 착 수 일: 2025. 2. 28. 나. 준공예정일: 2025. 12.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동해시 구호동 23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5)사업 나. 명 칭 : 동해발전본부 공해방지설비(탈황설비)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시설결정(부지)면적 : A = 141.131.9㎡(115,527.4㎡)

그ㅂ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m')				
1 1	시원		결정면적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1	구호동 231	장	115,527.4	115,527.4	_	_		
2	구호동 230	장	25,604.5	_	_	기조성		
	합 계		141,131.9	115,527.4	_	변경 없음		

### 나. 공작물 조서 (A = 6,751.33㎡)

711	भीसी		면적(m²)		מן יי
구분	시설명	기 승인	금회 시행	합 계	비고
	합 계	6,516.382	234.948	6,751.330	
1	광고탑	_	_	_	
2	태양광에너지시설	-	_	_	
3	굴뚝	30.18	_	30.18	
4	이송시설	-	-	-	2013.04.2 3. 취하
5	저장시설물/ 운반시설/ 연소가스처리시설/ 운반시설 등	765.54	_	765.54	
6	BIOMASS SILO - 1, 21 / 44 TRANSFER TOWER	224.73	_	224.73	
7	조탄실 / 벨트콘베이어대 등	1,564.74	_	1,564.74	
8	조탄실 / 벨트콘베이어대 등	2,693.99	_	2,693.99	
9	저장시설	44.75	_	44.75	
10	태양광구조물	503.55	_	503.55	
11	철골지지구조물	688.902	_	688.902	
12	UNIT#1 DRY REACTOR(건식반응탑)	_	87.908	87.908	
13	UNIT#2 DRY REACTOR(건식반응탑)	-	87.908	87.908	
14	UNIT#1 I.D FAN OUTLET PLATFORM STACK INLET WALKWAY PLAN	_	29.566	29.566	
15	UNIT#2 I.D FAN OUTLET PLATFORM STACK INLET WALKWAY PLAN	-	29.566	29.566	

다. 건축물 조서(A = 52,996.72m²)

.J. H	्रो क्षेत्र		연	면적(m²)		H) =
구분	시설명	기 승인	금회 시행	합 계	층 수	비고
	합 계	52,604.07	392.65	52,996.72	지하1층~지상13층	
1	터빈 및 주제어건물	11,176.96	_	11,176.96	지하1층/지상4층	
2	보일러건물	5,134.76	_	5,134.76	지상13층	
3	종합사무실	3,735.78	_	3,735.78	지하1층/지상3층	
4	수처리 및 폐수처리건물	1,968.80	_	1,968.80	지상2층	
5	종합창고	3,706.20	_	3,706.20	지상1층	
6	기계공작실	1,143.60	-	1,143.60	지상2층	
7	#2 터빈건물	5,937.20	_	5,937.20	지상4층	
8	#2 보일러건물	5,134.76	_	5,134.76	지상13층	
9	점화유 펌프실	150.00	_	150.00	지상1층	
10	유지창고	300.00	_	300.00	지상1층	
11	정문 경비실	197.53	_	197.53	지상1층	
12	후문 경비실	21.56	_	21.56	지상1층	
13	#1 초소	5.76	_	5.76	지상1층	
14	#2 초소	5.76	_	5.76	지상1층	
15	보조보일러	0.00	_	0.00	_	
16	폐기물창고	342.50	_	342.50	지상1층	
17	질소,탄산가스 창고	112.00	_	112.00	지상1층	
18	수소,탄산가스 창고	36.96	_	36.96	지상1층	
19	T.T.T	1,262.25	_	1,262.25	지상8층	
20	공기압축기실	0.00	_	0.00	_	
21	전기제어동	97.56	_	97.56	지상1층	
22	체육관	0.00	_	0.00	_	
23	제2정비동	810.00	_	810.00	지상3층	
24	터빈 및 주제어건물	3,531.589	_	3,531.589	지하1층/지상3층	
25	보일러건물	1,212.289	-	1,212.289	지상2층	
26	연료하역 및 보관건물	4,154.11	_	4,154.11	지상3층	
27	경비실 및 통합방제센터	990.36	_	990.36	지상3층	
28	정비동	1,139.54	_	1,139.54	지상3층	
29	전기실	72.15	_	72.15	지상1층	
30	ESS 컨테이너1	30.51	_	30.51	지상1층	
31	ESS 컨테이너2	30.51	_	30.51	지상1층	
32	창 고	15.56	_	15.56	지상1층	
33	UNIT#1활성탄 및 흡수제저장건물	-	123.21	123.21	지상1층	
34	UNIT#1전기실	-	51.75	51.75	지상1층	
35	UNIT#1활성탄및흡수제저 장 및 전기실	-	217.69	217.69	지상2층	
36	제3 경비동	147.50	_	147.50	지상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권명호나. 주 소: 동해시 공단9로 145, 1층(구호동)

5.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

가. 착 수 일: 2025. 2. 28. 나. 준공예정일: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유권		권이외권리	비고
127	고세시	시 현	71 5	(m²) (r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12
1	구호동	231	장	115,527.4	115,527.4	한국동서발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_	_	
2	구호동	230	장	25,604.5	25,604.5	] 원수중시결선 	167	_	_	
	합계			141,131.9	141,131.9					

나. 물건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30-2608)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삼척시 공고 제2025-315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안)의 열람 공고

- 1. 삼척시 고시 제2023-219호(2023. 12. 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의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사업면적, 편입토지조서 등) 작성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안) 열람 공고하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삼 척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14-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사업

나. 명칭 :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6)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 설 명	사업의 면적(m²)			사업의 규모(m)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연장	+(L)	폭원(B)	
		11.9	11.0	207	기정	변경	7 C(D)		
도시계	획도로	소로2-16	1,500.4	감)382.1	1,118.3	177.0	100.0	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삼척시장(도시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5. 열람의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5. 2. 28. ~ 2025. 3. 16.(16일간)

나. 열람장소: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2020. 6. 26.나. 준공예정일: 2025. 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토지	시소재지		면적	(m²)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내동	14-6	도	167.3	125.2	국토해양부	국		
2	성내동	14-3	도	504.0	18.0	국토해양부	국		
3	성내동	16-30	도	3.0	3.0	강원도지사	공		
4	성내동	25	도	3,918.0	278.3	국토해양부	국		
5	성내동	17-5	대	169.0	11.7	국토해양부	국		
6	성내동	16-36	대	49.8	0.4	삼척시	공		
7	성내동	16-51	대	14.0	0.6	삼척시	공		
8	성내동	16-52	대	11.7	2.3	삼척시	공		
9	성내동	16-32	대	185.8	13.4	삼척시	공		
10	성내동	16-2	도	50.2	50.2	강원도지사	공		
11	성내동	17-22	대	103.0	1.9	삼척시	공		
12	성내동	16-44	대	92.8	73.1	삼척시	공		
13	성내동	17-10	도	30.0	22.7	삼척시	공		
14	성내동	17-3	차	271.0	6.8	삼척시	공		
15	성내동	16-1	도	24.5	24.5	국토해양부	국		
16	성내동	17-9	도	50.0	25.5	강원 삼척시 성내동 1*-*	장*진		
17	성내동	16-29	대	26.8	3.0	삼척시	공		
18	성내동	16-6	도	57.9	9.4	강원도지사	공		
19	성내동	16-5	도	5.0	5.0	강원도지사	공		
20	성내동	16-58	대	49.6	26.3	삼척시	공		
21	성내동	16-38	도	87.0	87.0	국토해양부	국		
22	성내동	17-8	도	30.0	23.9	강원도지사	공		
23	성내동	16-57	대	22.8	8.3	삼척시	공		
24	성내동	16-8	도	7.0	7.0	강원 삼척시 성내리 1*-*	김*경		
25	성내동	25-17	대	2.0	1.8	기획재정부	국		
۷۵	৫৸ঽ	ZJ -11	네	<b>4.</b> U	1.0	삼척시	공		
26	성내동	6-59	도	187.9	0.2	삼척시	공		

	토/	시소재지		면적(m²)		소유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7	성내동	25-14	도	11.3	0.8	국토해양부	국			
28	성내동	2-15	도	253.0	253.0	국토해양부	국			
29	성내동	2-36	대	34.0	34.0	삼척시	공			
30	성내동	16-4	대	271.0	1.0	삼척시	공			
	합	계		6,689.4	1,118.3					

※ 기타(물건 등): 토지상의 일체 지장물을 포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삼척시 공고 제2025-331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1,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삼척시 고시 제2024-222호(2024. 10. 25.)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되고, 삼척시 고시 제 2024-224호(2024. 10. 25.)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미한 사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1,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 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1, 사회복지시설) 사업

나. 명칭 : 삼척 복합노인복지관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b>I</b> 5	E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	건축 관련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사업면적(m²)	비고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1	삼척 복합노인복지관	남양동 7-1번지 일원	5,940.1			
주 용도		٦	노유자시설(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인복지시설)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구 조		Ž	<u> </u>	층수/최고높이	지상3층/18.9m		
건축면적(m	건축면적(m²)		1,167.88	건폐율(%)	19.66		
연 면 적(m	연 면 적(m²)		2,986.26	용적률(%)	50.27		
조경면적(m	2)		933.41	주차대수	68대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1) 사업									
구 분	시 설 명	사업규	모(m)	사업면적(m²)	मी न				
丁 正	기 결 경	연장(L)	폭원(B)		비고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소로1-61	95.0	10.0	5,940.1					

<sup>·</sup> ※ 준공도면 및 관계도서 열람 가능 장소 - 삼척시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축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5. 사업착수일 및 공사완료일

가. 사업착수일: 2022. 7. 12. (건축허가일)

나. 공사완료일: 2024. 11. 26.

#### 영월군 고시 제2025-52호

### 영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영월군 고시 제1999-138(1999.12.28.)호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4-245(2024.12.20.)호로 실시 계획 (변경) 인가 된 영월 군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2월 24일

영월 군수

(단위: m²)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o 종류 :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ㅇ 명칭 :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변경)
  - o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구분	합계	임	대	잡	_	_	비고
필지수	7	4	2	1	_	-	
면적(m²)	22,468	14,243	7,395	830	_	_	

#### o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문화시설용지	궤도시설(중복결정)	비고
면적(m²)	22,468	22,468	2,137	

o 실시계획인가 면적(변경) : 7,463m² → 8,117m²

o 건축물현황(변경)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용도
당초	4,076	4,103.61	5,565.12	지하2,지상4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	14,342	2,845.94	4,758.76	지하2,지상4	문화 및 집회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4

o 성명: 영월군수(기획감사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면 적	(m²)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기억 	사업전체	시행	[면적	78 78	7 2
합계		7필지		1,973,004	22,468	당초	7,463	_	_
됩계		7 현기		1,973,004	22,400	변경	8,117		
1	영흥리	산59	임	1,927,537	6,361	당초	2,754	영월군	
1	0.24	4.09	D D	1,927,007	0,301	변경	3,458	o 된 년	
2	영흥리	산60-3	임	22,187	5,690	당초	2,154	영월군	
	0.24	-500 3	D D	22,107	3,090	변경	2,156	0 원년	
3	영흥리	154-1	잡	830	830	당초	830	영월군	
3	004	104 1	H	830	000	변경	830	0 된 년	
4	영흥리	154-3	대	4,076	4,076	당초	1,198	영월군	
4	009	104 0	911	4,070	4,070	변경	1,085	0 근 년	
5	영흥리	154-5	임	503	503	당초	503	영월군	
	009	104 0	П	300	300	변경	503	0 근 년	
6	영흥리	154-7	대	3,319	3,319	당초	24	영월군	
	004	104 /	511	0,010	0,013	변경	85	0 근 년	
7	영흥리	산61	임	14,552	1,689	당초	_	영월군	
1	004	701	П	14,002	1,000	변경	_	Ö 된신	

<sup>7.</sup>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리청에 무상 귀속. 끝.

#### 영월군 공고 제2025-339호

### 영월 군관리계획(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

- 1. 강원도 고시 제2007-44호(2007. 03. 16)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4-254(2024.12.24.)호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영월 군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 합니다.
- 2. 사업 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우리 군(지역개발실 033-370-211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월 25일

영 월 군 수

- 1. 위치 (변경 없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89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종류 : 영월 군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나. 명칭 : 영월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 영월군수(환경위생과)

나.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4. 사업의 목적
  - 동강의 생태자원에 대한 전시·체험 및 탐방 등 자연생태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보전지역내 지역 주민의 도농 간 교류를 통한 도시적 문화의 직간접적 체험으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생태관 광의 중심지 조성
- 5. 변경사유
  - o 동강생태공원 구역의 단계별 사업계획 중 2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함

### 6.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o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면적 (변경)

		공원조성계	획 면적(m²)		,	실시계획신청(m²	)	
구 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	1단계 시행	2단계 시행	3단계 시행	비고
합 계	171,190.6	감)3,811.1	167,379.5	100.0	41,183.5	1,654	124,542	
도로또는광장	14,575.2	감)143.9	14,431.3	8.6	9,811.0	1,315	3,305.3	
조경시설	1,843.0	증)125	1,968.0	1.2	0.0	_	1,968.0	
휴양시설	1,009.8	감)1,009.8	_	_	_	_	_	
유희시설	1	증)1,009.8	1,009.8	0.6	1,009.8	0	0	
교양시설	23,342.0	-	23,342.0	13.9	18,808.0	0	4,534.0	
편익시설	10,408.7	_	10,408.7	6.2	10,164.7	0	244.0	
관리시설	_	증)1,729.0	1,729.0	1.0	1,390.0	339	0	
녹 지	120,011.9	감)5,521.2	114,490.7	68.4	0	0	114,490.7	

### ㅇ 건축물 현황(변경)

- 건축면적, 연면적은 변경없으며 공원면적 변경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변경

	구 분	건축면적 (m²)	연면적 (m²)	건폐율 (%)	용적율 (%)	규모 (층)	건축높이 (m)	भ <u>ोज</u>
	생태정보관	930	871	0.56	0.52	지상 1	6.2	
	곤충박물관	3,120	4,162	1.86	2.49	지상 2	13.8	
기존	유스호스텔	947	1,530	0.57	0.91	지하 1 지상 2	9.8	
	미래곤충센터	1,595	2,543	0.95	1.52	지상2	10.00	

###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o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1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2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변경) (1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2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3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위치 :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일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토지조서 (금회신청)

순번	지번	지목	면 2	덕 (m²)	소유기	}	申 ユ
- 단인	기반	시도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H 77
계	3필지		29,381	2,642			* 금회시행 (총면적:1,654㎡) (법면/공사구간 포함:2,642㎡)
1	산65	임	24,060.0	1,740.0			- 도로:1,315㎡
2	산72-1	임	1,712.0	707.0	하송리 242	영월군	(법면 포함 : 2,283㎡) - 오수처리시설:339㎡
3	산95	임	3,609.0	195.0			(공사구간 포함 : 359㎡)

### ■ 토지조서 (전체)

### (기정)

人山	ગમો	حا p	면 ?	적(m²)	소유자		소유권이	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계	109필지		250,244	171,190.6				
1	258	임	539	539				
2	259	임	366	366				
3	878	전	1,213	1,213				
4	879	전	1,855	1,855				
5	880	전	725	725				
6	882	전	1,240	1,240				
7	883	전	1,002	1,002				
8	884	전	159	159				
9	885	전	403	403				
10	892-1	전	814	814				
11	892-8	전	472	472				
12	892-10	전	33	33	하송리 242	영월군		
13	892-2	전	497	497				
14	892-4	전	444	444				
15	892-5	전	1,224	1,224				
16	892-12	전	32	32				
17	892-14	전	732	732				
18	892-18	전	23	23				
19	892-20	전	1,075	1,075				
20	893-7	전	156	156				
21	895	전	494	494				
22	895-2	전	217	217				
23	896-4	전	105	105				
24	896-6	전	357	357				
25	896-8	전	516	516				
26	896-9	전	190	190				

, .			면 2	덕 (m²)	소유자		소유권여	기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27	896-10	전	147	147				
28	896-12	전	20	20				
29	897	전	965	965				
30	897-1	전	378	378				
31	897-3	전	542	542				
32	897-4	전	507	507				
33	897-5	전	366	366				
34	897-7	전	344	344				
35	898	전	700	700				
36	898-3	전	33	33				
37	899-3	전	907	907				
38	899-4	전	109	109				
39	900-2	전	2,362	2,362				
40	900-3	전	1,766	1,766				
41	902-5	전	351	351				
42	903	전	595	595	하송리 242	영월군		
43	904	전	1,341	1,341	1,01,212	0.55		
44	905	전	1,671	1,671				
45	906	전	271	271				
46	963	전	747	747				
47	963-2	전	150	150				
48	964	전	639	639				
49	965	전	1,069	1,069				
50	966	전	598	598				
51	967	전	486	486				
52	968	전	48	48				
53	975	전	406	406				
54	975-9	전	108	108				
55	975-1	전	619	619				
56	975-11	전	87	87				
57	975-2	임	70	70				
58	975-3	임	60	60				
59	975-4	임	449	449				
60	975-13	임	54	54				
61	975-5	전	329	329	하송리 242	영월군		
62	975-6	임	135	135	•			
63	산53	임	116,886	1,041				
64	산53-5	임	84	84				
65	산53-7	임	153	153				
66	산53-8	임	16	16				
67	산54	임	5,232	5,232				
68	산54-1	임	75	75				

22	-1 -1	-177	면 ?	적 (m²)	소유기	<b>\</b>	소유권이	]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69	산54-3	임	72	72				
70	산55	임	2,354	2,354				
71	산55-2	임	867	867				
72	산55-3	임	25	25				
73	산57	임	10,415	10,415				
74	산57-5	임	350	350				
75	산57-11	임	1,711	1,711				
76	산58	임	1,091	1,091				
77	산59	임	19,737	19,737				
78	산60	임	17,082	17,082				
79	산60-2	임	3,619	3,619				
80	산65	임	24,060	24,060				
81	산95	임	3,609	3,609				
82	산95-2	임	5,194	5,194				
83	1656	대	8,799.5	8,799.5				
84	1657	대	2,671.9	2,671.9				
85	1658	대	4,229.1	4,229.1				
86	1659	대	5,825.3	5,825.3				
87	1660	차	577.7	577.7				
88	1661	차	479.8	479.8				
89	1662	차	3,004.8	3,004.8				
90	1663	차	277.1	277.1				
91	1664	도	2,708.0	2,708.0				
92	1665	도	250.9	250.9				
93	1666	도	258.4	258.4				
94	1667	도	1,464.8	1,464.8				
95	1668	도	194.0	194.0				
96	1669	도	2,205.8	2,205.8				
97	1670	도	1.2	1.2				
98	1671	공	1,124.3	1,124.3				
99	1672	공	3,106.3	3,106.3				
100	1673	공	1,009.8	1,009.8				
101	1674	공	1,604.8	1,604.8				
102	1675	공	1.5	1.5				
103	1676	공	30.4	30.4				
104	1677	공	11.9	11.9				
105	1678	공	8.3	8.3				
106	1679	공	53.9	53.9				
107	1680	공	45.3	45.3				
108	1681	공	29.0	29.0				
109	1682	공	117.8	117.8				

(변경)

人山	2) HJ	기묘	면 2	(m²)	소유지	}-	소유권이	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계	109필지		288,381.6	167,379.6				
1	258	임	539	539				
2	878	전	1,213	1,213				
3	879	전	1,855	1,855				
4	880	전	725	725				
5	882	전	1,240	1,240				
6	883	전	1,002	1,002				
7	884	전	159	159				
8	885	전	403	403				
9	892-1	전	814	814				
10	892-8	전	472	472				
11	892-10	전	33	33				
12	892-2	전	497	497	하송리 242	영월군		
13	892-4	전	444	444	0 0 0 242	0 근 년		
14	892-5	전	1,224	1,224				
15	892-12	전	32	32				
16	892-14	전	732	732				
17	892-18	전	23	23				
18	892-20	전	1,075	1,075				
19	893-7	전	156	156				
20	895	전	494	494				
21	895-2	전	217	217				
22	896-4	전	105	105				
23	896-6	전	357	357				
24	896-8	전	516	516				
25	896-9	전	190	190				
26	896-10	전	147	147				
27	896-12	전	20	20				
28	897	전	965	965				
29	897-1	전	378	378				
30	897-3	전	542	542				
31	897-4	전	507	507				
32	897-5	전	366	366				
33	897-7	전	344	344				
34	898	전	700	700				
35	898-3	전 .	33	33				
36	899-3	전 .	907	907				
37	899-4	전	109	109				
38	900-2	전	2,362	2,362				
39	900-3	전	1,766	1,766				
40	902-5	전	351	351				

人司	2)11	-) T	면	적(m²)	소유지		소유권이	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41	903	전	595	595				
42	904	전	1,341	1,341				
43	905	전	1,671	1,671				
44	906	전	271	271				
45	963	전	747	747				
46	963-2	전	150	150				
47	964	전	639	639				
48	965	전	1,069	1,069				
49	966	전	598	598				
50	967	 전	486	486				
51	968	 전	48	48				
52	975	<u></u> 전	406	406				
53	975-9	전	108	108	하송리 242	영월군		
54	975-1	전	619	619				
55	975-11	전	87	87				
56	975-2	임	70	70				
57	975-3	임	60	60				
58	975-4	임	449	449				
59	975-13	임	54	54				
60	975-5	전	329	329				
61	975-6	임	135	135				
62	산53	임	116,886	1,041				
63	산53-5	임	84	84				
64	산53-7	임	153	153				
65	산53-8	임	16	16				
66	산54	임	5,232	5,232				
67	산54-1	임	75	75				
68	산54-3	임	72	72				
69	산55	임	2,354	2,354				
70	산55-2	임	867	867				
71	산55-3	임	25	25				
72	산57	임	10,415	10,415				
73	산57-5	임	350	350				
74	산57-11	임	1,711	1,711	하송리 242	영월군		
75	산58	임	1,091	1,091				
76	산59	임	19,737	19,737				
77	산60	임	17,082	17,082				
78	산60-2	임	3,619	3,619				
79	산65	임	24,060	18,902.9				
80	산95	임	3,609	3,609				
81	산95-2	임	5,194	5,194				
82	1656	대	8,799.5	8,799.5				

人山	2)11)	7) 17	면 ?	적 (m²)	소유지	- -	소유권이	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83	1657	대	2,671.9	2,671.9				
84	1658	대	4,229.1	4,229.1				
85	1659	대	5,825.3	5,825.3				
86	1660	차	577.7	577.7				
87	1661	차	479.8	479.8				
88	1662	차	3,004.8	3,004.8				
89	1663	차	277.1	277.1				
90	1664	도	2,708.0	2,708.0				
91	1665	도	250.9	250.9				
92	1666	도	258.4	258.4				
93	1667	도	1,464.8	1,464.8				
94	1668	도	194.0	194.0				
95	1669	도	2,205.8	2,205.8				
96	1670	도	1.2	1.2				
97	1671	공	1,124.3	1,124.3				
98	1672	공	3,106.3	3,106.3				
99	1673	공	1,009.8	1,009.8				
100	1674	공	1,604.8	1,604.8				
101	1675	공	1.5	1.5				
102	1676	공	30.4	30.4				
103	1677	공	11.9	11.9				
104	1678	공	8.3	8.3				
105	1679	공	53.9	53.9				
106	1680	공	45.3	45.3				
107	1681	공	29.0	29.0				
108	1682	공	117.8	117.8				
109	산72-1	임	1,712	1,712				

### 나. 기타(분묘) 조서 : 해당 없음. 끝.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ul><li>공동주차출입구</li><li>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공개공지 해제</li></ul>	
기 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 평창군 고시 제2025-32호

### 봉평공원 및 소공원4개소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평창 군계획시설(봉평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이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평 창 군 수

- 가. 평창 군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아래와 같음 나.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
  - □ 평창군 관리계획시설(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봉평공원	근린공원	봉평면 원길리 산1일원	66,562	강원도 고시 제2023-96호 (2023.03.24.)	
신설	소공원1	소공원	대관령면 횡계리 279-117일원	2,969	평창군 고시 제2023-39호 (2023.03.31.)	
신설	송정4공원	소공원	진부면 송정리 2515	1,569	평창군 고시 제2015—24호 (2015.03.03.)	
신설	송정5공원	소공원	진부면 송정리 2531	1,246	평창군 고시 제2015—24호 (2015.03.03.)	
신설	소공원6	소공원	진부면 송정리 1378-7일원	3,200	평창군 고시 제2023-39호 (2023.03.31.)	

- 2.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2.1 봉평공원(근린공원)

# 1) 총괄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	(m²)	비고
丁 正	구시인식(Ⅲ <i>)</i>	시설턴삭(III <i>)</i>	건축면적	연면적	n 17.
계	66,562.0	10,193.0	58.0	58.0	시설율:15.3%
도로 및 광장	3,120.0	3,120.0	_	_	
도 로	2,032.0	2,032.0	_	_	도로조서 참조
광 장	1,088.0	1,088.0	_	_	
조 경 시 설	1,571.0	1,571.0	_	_	
휴 양 시 설	2,306.0	2,306.0	_	_	
유 희 시 설	396.0	396.0	_	_	
운 동 시 설	1,445.0	1,445.0	_	_	
교 양 시 설	195.0	195.0	_	_	
편익시설	1,102.0	1,102.0	_	_	
관 리 시 설	58.0	58.0	58.0	58.0	
녹지 및 기타	56,369.0	_	_	-	

# 2)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સ	도면		보기대정		건축면적	(m²)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공작물	비고
계	-	-	66,562.0	58.0	58.0	_	1		
		소 계	3,120.0	_	-	_	_		
		도로(소계)	2,032.0	_	-	_	_		
도로		광장(소계)	1,088.0	_	-	_	_		
및 광장	1-1	진입광장1	241.0	_	-	_	_		
0 0	1-2	진입광장2	586.0	_	-	_	_		
	1-3	중앙광장	261.0	_	-	-	-		
		소 계	1,571.0	_	-	-	-		
	2-1	야생화정원	485.0	_	-	-	-		
조경	2-2	철쭉정원	1,086.0	_	-	-	-		
시설	2-3	파고라	_	-	-	-	-	8EA	
	2-4	팔각정	_	-	-	-	-	1EA	
	2-5	플랜터	_	-	-	-	-	5EA	
		소 계	2,306.0	_	-	-	-		
	3-1	휴게쉼터1	654.0	_	-	-	-		
	3-2	휴게쉼터2	533.0	_	-	-	-		
	3-3	포켓쉼터1	194.0	_	-	-	_		
	3-4	포켓쉼터2	50.0	_	-		_		
휴양	3-5	포켓쉼터3	35.0	-	-	_	-		
시설	3-6	포켓쉼터4	89.0	-	_	_	-		
	3-7	산림욕장	751.0	-	-	_	-		
	3-8	벤치	-	-	-	_	-	53EA	
	3-9	테이블벤치	-	-		_	-	6EA	
	3-10	앉음벽	-	-	-	_	_	8EA	

1 23	도면		버리라자		건축면적	(m²)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충수	공작물	비고
	3-11	평상	-	-	_	-	-	16EA	
	3-12	썬베드	_	_	_	_	_	5EA	
		소 계	396.0	-	_	-	-		
유희 시설	4-1	지형놀이터	396.0	-	_	_	_		
	4-2	지형놀이시설	-	-	-	_	_	3EA	
		소 계	1,445.0	_	_	_	_		
운동	5-1	자연학습체험원	1,065.0	-	_	-	-		
시설	5-2	시니어놀이터	380.0	-	_	-	-		
	5-3	자연학습시설	-	-	_	-	-	6EA	
	5-4	체력단련시설	-	_	_	_	_	11EA	
A).		소 계	195.0	_	_	_	_		
교양 시설	6-1	숲속작은도서관	195.0	-	-	-	-		
71년	6-2	야외책장	-	-	-	-	-	1EA	
디시		소 계	1,102.0	-	-	-	-		
편익 시설	7-1	주차장	752.0	-	-	_	_		
15	7-2	전망대	350.0	_	-	_	_		
नो नो		소 계	58.0	58.0	58.0	_	1층		
관리 시설	8-1	관리사무소	58.0	58.0	58.0	_	1층		
1년	8-2	안내판	-	_	-	_	-	7EA	
녹지		소 계	56,369.0	-	_	_	-		
7/1		녹지	56,369.0	-	_	_	-		

# 3) 도로 조서

구분	드리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점	종 점	비고
1	소로	3	1	1.5	76.0	114.0	주차장	중앙광장	
2	소로	3	2	2.5	88.0	220.0	주차장	야생화정원	
3	소로	3	3	1.8	340.0	612.0	진입광장	철쭉정원	
4	소로	3	4	1.5	262.0	393.0	휴게쉼터1	진입광장2	
5	소로	3	5	1.5	112.0	168.0	포켓쉼터1	소로3-3	
6	소로	3	6	1.5	104.0	156.0	자연학습체험원	소로3-5	
7	소로	3	7	1.5	94.0	141.0	포켓쉼터3	휴게쉼터2	
8	소로	3	8	1.5	16.0	24.0	부지외곽	포켓쉼터4	
9	소로	3	9	1.5	58.0	87.0	부지외곽	산림욕장	
10	소로	3	10	1.8	65.0	117.0	부지외곽	숲속작은도서관	
	소 계				1,215.0	2,032.0			

# 2.2 소공원1(소공원)

# 1) 총괄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	H (m²)	- 비고
1 र	(m²)	(m²)	건축면적	연면적	비걘
계	2,969.0	539.0	-	-	시설율:18.2%
도로 및 광장	430.0	430.0	_	_	
도 로	320.0	320.0	_	_	도로조서 참조
광 장	110.0	110.0	_	_	
조 경 시 설	_	_	_	_	
휴 양 시 설	109.0	109.0	_	_	
운동시설	_	_	_	_	
관리시설	_	_	_	_	
녹지 및 기타	2,430.0	_	_	-	

# 2)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시 설	도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m²)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구시한격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충수	공작물	비고
계	-	_	2,969.0	-	-	-	-		
		소 계	430.0	-	_	_	-		
도로		도로(소계)	320.0	-	_	-	-		
및 광장		광장(소계)	110.0	-	-	-	-		
	1-1	진입광장1	110.0	-	-	-	-		
조경		소 계	-	-	-	-	-		
시설	2-1	파고라	-	-	-	-	-	1EA	
		소 계	109.0	_	-	-	-		
휴양	3-1	전망쉼터	71.0	-	-	-	-		
시설	3-2	포켓쉼터	38.0						
	3-3	벤치	-	-	-	-	-	8EA	
0도 기사		소 계	-	-	-	-	-		
운동 시설	4-1	체력단련시설	-	-	-		-	3EA	
चीची भीक्ष		소 계	-	-	-	-	-		
관리 시설	5-1	안내판	-	-	-	-	-	1EA	
녹지 및		소 계	2,430.0	-	-	-	-		
기타		녹지	2,430.0						

# 3) 도로 조서

구분	등그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점	종 점	비고
1	소로	3	1	1.5	120.0	180.0	진입광장	소로3-3	
2	소로	3	2	2.0	12.0	24.0	진입광장	전망쉼터	
3	소로	3	3	2.0	22.0	44.0	진입광장	전망쉼터	
4	소로	3	4	1.5	48.0	72.0	소로3-1	소로3-1	
	소 계				202.0	320.0			

# 2.3 송정4공원(소공원)

# 1) 총괄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격	d (m²)	· 비고
⊤ ゼ	(m²)	(m²)	건축면적	연면적	1 11 11
계	1,569.0	313.0	_	_	시설율:19.9%
도로 및 광장	94.0	94.0	_	_	
도 로	8.0	8.0	_	_	도로조서 참조
광 장	86.0	86.0	_	_	
조 경 시 설	-	_	_	_	
휴 양 시 설	130.0	130.0	_	_	
운 동 시 설	89.0	89.0	_	_	
교 양 시 설	_	_	_	_	
편익시설	_	_	-	_	
관리시설	_	_	_	_	
녹지 및 기타	1,256.0	_	_	_	

# 2)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al Al	도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m²)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구시한국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충수	공작물	비고
계	ı	-	1,569.0	_	1	_	1		
		소 계	94.0	_	-	_	-		
도로		도로(소계)	8.0	_	_	_	_		
및 광장		광장(소계)	86.0	_	-	_	-		
광장	1-1	입구광장	68.0	_	-	_	-		
	1-2	진입광장	18.0	_	-	_	-		
7 74		소 계	-	_	-	_	-		
조경 시설	2-1	파고라	-	_	-	_	-	1EA	
15	2-2	계단	-	_	-	_	-	1EA	
		소 계	130.0	-	-	_	-		
휴양	3-1	휴게쉼터1	44.0	-	-	_	_		
시설	3-2	휴게쉼터2	86.0	-	-	-	-		

2) 2)	도면		버기터가		건축면적(	m²)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충수	공작물	則고
	3-3	벤치	-	-	-	-	-	16EA	
		소 계	89.0	-	-	-	-		
운동 시설	4-1	체력단련장1	51.0	-	-	-	-		
한당 시설	4-2	체력단련장2	38.0	-	-	_	_		
	4-3	체력단련시설	_	-	-	_	-	7EA	
교양		소 계	_	-	-		-		
시설	5-1	기념비	_	-	-	-	-	1EA	
편익		소 계	-	-	-	-	-		
시설	6-1	음수대	-					1EA	
관리 시설		소 계	-	-	-	-	-		
선터 기열	7-1	안내판	_					1EA	
녹지 및		소 계	1,256.0	-	_	-	-		
기타		녹지	1,256.0						

### 3) 도로 조서

구분	트그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점	종 점	비고
1	소로	3	1	2.5	3.2	8.0	부지외곽	체력단련장1	
	소 계				3.2	8.0			

# 2.4 송정5공원(소공원)

# 1) 총괄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격	ET (m²)	비고
ी स		(m²)	(m²)	건축면적	연면적	비포
계		1,246.0 247.0				시설율:19.8%
도로 및 광장		67.0	67.0			
도 로		67.0	67.0	_	_	도로조서 참조
광 장		-	_	_	_	
조 경 시 설		_	_	_	_	
휴 양 시 설		180.0	180.0	_	_	
운 동 시 설		_	_	_	_	
편익시설		-	_	_	_	
관리시설		_	_	_	_	
녹지 및 기타		999.0	_	_	_	

# 2)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시 설	도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m²)		>	,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충수	공작물	비고
계	-	-	1,246.0	_	-	-	-		
도로		소 계	67.0	-	-	-	-		
및 광장		도로(소계)	67.0	-	-	_	-		
광장		광장(소계)	_	-	-	-	-		
27		소 계	-	-	-	-	-		
조경 시설	1-1	파고라	_	-	-	-	-	1EA	
기구	1-2	계단	_	-	-	_	-	2EA	
		소 계	180.0	-	-	-	-		
휴양	2-1	휴게쉼터1	171.0	-	-	-	-		
시설	2-2	휴게쉼터2	9.0	-	-	_	_		
	2-3	벤치	_	-	-	_	_	14EA	
운동		소 계	_	-	-	-	-		
시설	3-1	체력단련시설	_	-	_	_	_	3EA	
편익		소 계	-	-	-	_	-		
시설	4-1	음수대	-	_	-	_	_	1EA	
귀기		소 계	-	-	-	-	-		
관리 시설	5-1	안내판	-	-	-	-	-	1EA	
기원	5-2	휴지통	_	-	-	_	-	3EA	
녹지		소 계	999.0	-	-	-	-		
및 기타		녹지	999.0	-	_	_	_		

# 3) 도로 조서

구분	트그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점	종 점	비고
1	소로	3	1	3.0	5.0	15.0	부지외곽	휴게쉼터1	
2	소로	3	2	2.0	26.0	52.0	부지외곽	휴게쉼터1	
		소 계			31.0	67.0			

# 2.5 소공원6(소공원)

# 1) 총괄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	付 (m²)	비고
1 1	(m²)	(m²)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계	3,200.0	286.0	_	_	시설율:8.9%
도로 및 광장	54.0	54.0	_	_	
도 로	54.0	54.0	_	_	도로조서 참조
광 장	_	_	_	_	
조 경 시 설	50.0	50.0	_	_	
휴 양 시 설	182.0	182.0	_	_	
관리시설	_	_	_	_	
녹지 및 기타	2,914.0	_	_	_	

# 2)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시 설	도면	20. 20. 2	부지면적		건축면적	(m²)		- )-	,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m²)	바닥 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공작물	비고
계	_	_	3,200.0	_	_	_	_		
도로		소 계	54.0	_	_	_	_		
및		도로(소계)	54.0	_	_	_	_		
광장		광장(소계)	_	_	_	_	_		
		소계	50.0	_	_	_	_		
조경	1-1	포토존	50.0	_	_	_	_		
시설	1-2	스탠드	_	_	_	_	_	1EA	
	1-3	파고라	_	_	_	_	_	1EA	
		소 계	182.0	_	_	_	_		
휴양	2-1	향기정원	182.0	_	_	_	_		
시설	2-2	벤치	_	_	_	_	_	4EA	
	2-3	앉음벽	_	_	_	_	_	1EA	
공원		소 계	_	_	_	_	_		
관리 시설	3-1	안내판	-	_	_	_	_	1EA	
녹지 및		소 계	2,914.0	_	_	_	_		
기타		녹지	2,914.0	-	_	-	-		

# 3) 도로 조서

횡성군 고시 제2025-50호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횡 성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횡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12: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사업
  - 명 칭: 횡성소방서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498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횡성소방서장
  - 주 소: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해당없음

#### 횡성군 고시 제2025-51호

####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대동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대동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횡 성 군 수

- 가. 결정(변경) 취지
- ㅇ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구역계 변경
-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51-8번지 일원
- 다. 주요사항
  - ㅇ 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13,118m² (기정 13,251m², 감 133m²)
- 라.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 마.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3층) 비치]

# [붙임] 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m²)		최 초	,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변경	8	대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51-8번지 일원	13,251	감) 133	13,118	2023. 6. 2. (횡성군 고시 제2023-105호)	

#### ㅇ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m²)	변경사유
변경	8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51-8번지 일원	13,118	•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 반영을 위한 면적 축소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m²)		구성비	비고
	ी स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걘
	소계	13,251	_	13,251	100.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_	증) 133	133	1.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51	감) 133	13,118	99.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1	도면 표시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시 호	위 치 -	기 정	변 경	(m²)	(%)	결정(변경) 사유
-	-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51-8 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3	200% 이하	• 구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트그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sup>1278</sup> 기점 종점 (m)		형태	경과지	<sup>띄소</sup>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19	14	국지 도로	45	대3-2 읍하리 375-65전	소2-1 읍하리 375-52도	일반 도로	_	횡고제2023-105호 2023.6.2.	구역 외 기반시설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1	중1-2 읍하리 377-95전	소2-2 읍하리 353-3대	일반 도로		강고제77-5호 1977.01.31.	구역 외 기반시설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81	중1-2 읍하리 377-11도	소2-2 읍하리 353-3도	일반 도로		강고제77-5호 1977.01.31.	구역 외 기반시설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06	대3-2 읍하리 375-48도	소로1-1 읍하리 368-2대	일반 도로		강고제85-143호 1985.12.28.	구역 외 기반시설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306	대3-2 읍하리 375-48도	소로1-1 읍하리 368-21대	일반 도로		강고제85-143호 1985.12.28.	구역 외 기반시설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1	소로2-1	<ul> <li>도로 선형 일부 변경</li> <li>시점 지번 변경</li> <li>중1-2 읍하리 377-95전</li> <li>→중1-2 읍하리 377-11도</li> <li>종점 지번 변경</li> <li>소2-2 읍하리 353-3대</li> <li>→소2-2 읍하리 353-3도</li> </ul>	•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시설 위치 변경
변경	소로2-2	소로2-2	<ul> <li>도로 선형 일부 변경</li> <li>종점 지번 정정</li> <li>소로1-1 읍하리 368-2대</li> <li>→소로1-1 읍하리 368-21대</li> </ul>	•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시설 위치 변경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적(m²)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m²)		비고
		/1/8	1 T/0	민성구	Π ΛΙ	기정	변경	변경후	
A-1	А	13,251	감) 133	13,118	횡성읍 읍하리 351-8번지 일원	13,251	감) 133	13,118	공동주택부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드면비중	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u> </u> 고인민오	가구	획지	) 표	게 즉 네 ㅎ				
			하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25% 이하				
		1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A-1	A		1	1	1	1	1	배치
			형 태	•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 확보 유도				
			색 채	• 횡성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부대복리시설 부분 제외)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위치 도면번호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그인건모	가구	획지					
A-1		1	주출입구	•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 출입 불허구간 지정			
A-1			주차장	• 주차구획은 형태별 규모 이상으로 계획 • 주차대수 : 세대당 1.5대 이상 확보			

정선군 공고 제2025-180호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 1. 사업개요

가.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다. 면 적: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별도 기재

라. 변경사유 : 고한 시가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광장 신설 및 접속도로 변경마. 변경내용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2025. 2. 21. ~ 2025. 3. 7.(14일 이상)

- 4.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다음과 같음"
- 5.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 7. 기타사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 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그ㅂ	도면	구 역 명	위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표시번호		1 = 7	T 4	기정	변경		변경후	미끄
기정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62,250	-	62,250	강고 제83호 (02.4.15)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丁 ゼ	기정	변경	변경후	7.8.1	112
	합 계	62,250	_	62,25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40	_	17,040		
누거시역 	준주거지역	9,547	_	9,547		
상업지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35,66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가. 도로

### (1) 도로 결정(변경)(안) 총괄표

구 분		합계		1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9	1,178	2	164	3	738	4	276	
[ 업계	변경	8	1,139	2	164	2	711	4	264	
대로	기정	1	46	_	_	_	_	1	46	
중로	기정	1	648	_	_	1	648	_	-	
소로	기정	7	484	2	164	2	90	3	230	
T.E.	변경	6	445	2	164	1	63	3	218	

### (2)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주 요 경과지	의 소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71 (46)	구역계 고한리 124-4철	중로 2-7 고한리 124-9대	일반 도로	고한남부 장로교회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48)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25	대로 3-2 고한리 121-24도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임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9	중로 3-8 고한리 120-92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ı	강고 제2577호 (73.12.26)	

	1											
-17		7	卫		-11	연장	-1 -1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96호 (10.7.9)	
폐지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96호 (10.7.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 1-13 고한리 산297-57도	중로 2-7 고한리 274-276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 제2577호 (73.12.26)	
-1-1	, -7	0	00	0	국지	65	소로 2-27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반		정선고 제29호	
기정	소로	3	22	2 6	도로	(20)	고한리 274-36대	고한리 274-299전	도로	_	(02.5.1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 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 274-196대	일반 도로	_	정선고 제25호 (16.4.19)	
변경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40	소로 1-11 고한리 274-110도	B호 광장 고한리 274-196대	일반 도로	_	정선고 제25호 (16.4.19)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58)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sup>※ ( )</sup>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3)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8	_	○ 소로 2-18 폐지 - B = 8m , L = 27m	ㅇ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 3-35	소로 3-35	○ 연장 변경 및 종점 변경 - L = 152m → 140m (감 12m) - 종점 변경 : 5호 광장 → B호 광장	○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및 종점 변경

### 나. 광장

# (1) 광장 결정(변경)(안) 조서

그브 토면.	도면표시		시설의	위치 -		면적(m²)	최 초	비고	
1 1	구분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신설	В	광장	교통광장	고한읍 고한리 125-11대 일원	_	증) 816	816	_	

# (2) 광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В	광장	○ 광장(교통광장) 신설 - A = 816㎡	○ 고한 시가지 진출입 관문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광장 신설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 1.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없음
- 1)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주 거 지 역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기정	상 업 지 역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 동 건 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 2)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 3)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		

#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획 지		- 비고
1 1 1	번호	위 치	면적(m²)	1 11/1/
합계	기정	-	46,374	_
합계	변경	_	45,873	_
기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11,081	_
기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47	_
기정	СЗ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577	-
변경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339	· 교통광장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577㎡ → 339㎡, 감 238㎡)
기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400	_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4,137	· 교통광장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4,400㎡ → 4,137㎡, 감 263㎡)
기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626	_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011	_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844	_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288	_

- ④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변경없음
-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 2)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月立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o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ul> <li>○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li> <li>○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li> <li>─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li> <li>─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li> <li>─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li> </ul>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ul> <li>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li> <li>※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li> </ul>	

#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СЗ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ul><li>공동주차출입구</li><li>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공개공지 해제</li></ul>			
기 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 양구군 고시 제2025-11호

#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_봉안시설)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 양구군 고시 제2010-16호(2010. 4. 23.)로 최초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 양구군 보건위생시설)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발생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을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양구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양 구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5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양구 군계획시설(시설:보건위생시설)명칭: 양구군 봉안당 및 주차장 조성 신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시설명 전체면적 세부시설명 -			면적(m²)	нl ¬	
시설정	선세년식	세구시설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보건위생시설	17,910m²	양구군 봉안시설	17,910m²	증)31	17,941 m²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 수정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구군수(사회복지과)
  -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 5. 사업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년 2월 28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등 내역

1) 토지조서 : 기정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	유자	권리명세	비고								
번호	.  조세시 -	조세시	조세시	조세시	소세시	조세시	조세시	조세시	소세시	시민	시도	면적(m²)	면적(m²)	성명	주소	건덕경제	비끄
	합계	2필	지	17,910	17,910												
1	양구읍	352	전	2,063	2,063	공(양구군)											
2	하리	351-1	전	15,847	15,847	공(양구군)											

1-1) 토지조서 : 변경

일련		소재지	소 케기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	우자	권리명세	비고
번호			시민 	시축	면적(m²)	면적(m²)	성명	주소	] 건터경세	川上	
합계		4필2	지	17,941	17,941						
1		351-1	전	1,609	1,609	공(양구군)					
2	양구읍 하리	351-3	전	454	454	공(양구군)					
3		352	전	4,942	4,942	공(양구군)					
4		352-1	전	10,936	10,936	공(양구군)					

2) 건축물 : 해당없음